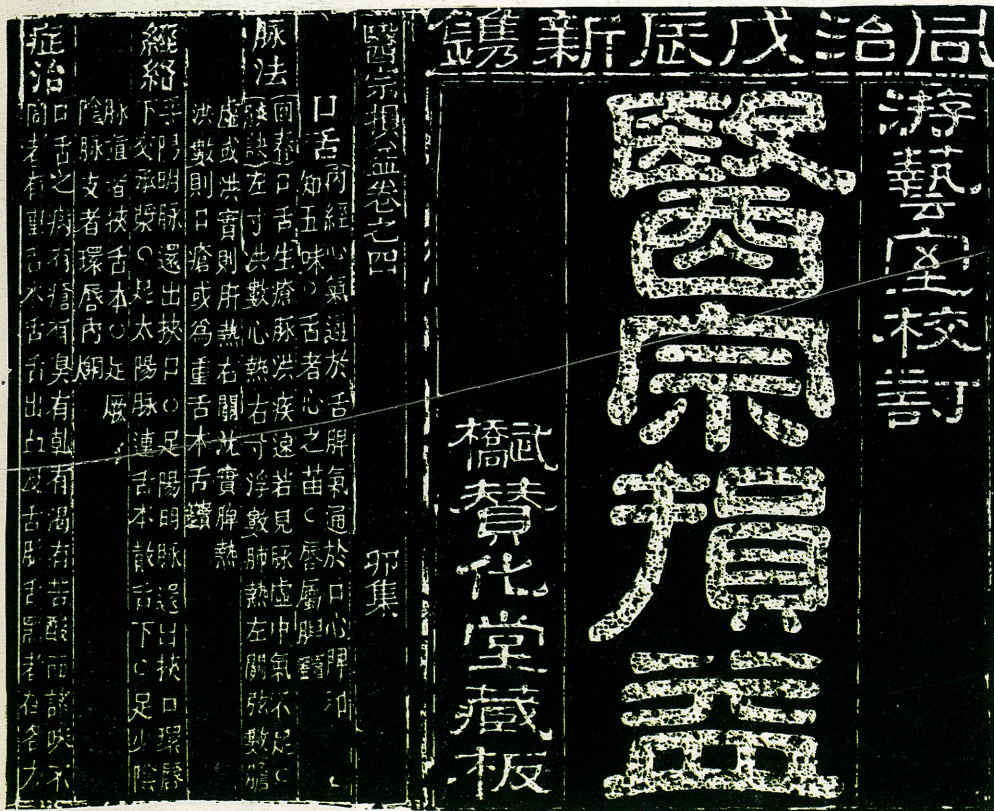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통권 11호

1990

제11권 제1호 · 통권11호 · 1960년 10월 7일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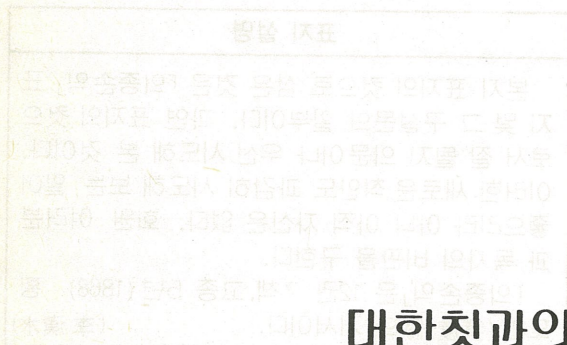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90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의사협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90

표지 설명

본지 표지의 컷으로 삼은 것은 「의종손익」 표지 및 그 구설문의 일부이다. 과연 표지의 컷으로서 잘 될지 의문이나 우선 시도해 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착안도 과감히 시도해 보는 일이 좋으리라 아나 아직 자신은 없다. 회원 여러분과 독자의 비판을 구한다.

「의종손익」은 12권 7책, 고종 5년(1868) 황도연(黃度淵)의 저서이다. (李漢水)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第11卷 第1号 通卷11号

目 次

卷 頭 言〈發刊에 즈음하여〉 李丙台 (7)

特別寄稿

○ 朝鮮朝末 開化期の 醫學教育 奇昌德 (9)

綜 說

○ 世界 近世齒醫學史(豫稿) 金正均・朴勝五・金官興 (20)

○ 齒科界團體活動(7) 辛在義 (23)

○ 實錄 1990 - 전문치과의사제도공방 李丙台 (26)

教 室 史

○ 高麗大學教醫科大學 齒科學教室 略史
..... 徐奎源・申相完 (45)

原 著

○ 西域에 關한 醫史學的 基礎調査 第2 報
..... 李漢水 (49)

學會消息

○ 中國訪問團 모 집 (자료) (64)

○ 集談會 (67)

大韓齒科醫史學會 發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11 No. 1, June. 1990

= CONTENTS =

Preface Lee, Byung-Tae (7)

SPECIAL ARTICLES

- Medical Education in the Enlightenment Period in the Late Era of the Yi Dynasty Kee, Chang-Duk (9)

GENERAL ARTICLES

- The History of Dentistry in Modern Age of the World
..... Kim, Jung-Kyun/Park, Seang-Oh/Kim, Gwan-Hung (20)
- Group Activity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Shin, Jae-Eui (23)
- Authentic Record 1990 Argument on Specialty of Dentistry in Korea
..... Lee, Byung-Tae (26)

HISTORY

- Brief History of Dental Department of Dentistry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Suh, Kyu-Won/Shin, Sang-Wan (45)

ORIGINAL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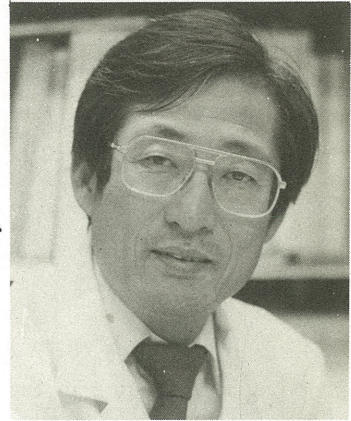
- The History of Introduction of Dental Medicines of Western Countries in to Korea(No. 2) Rhee, Han-Soo (49)

NEWS AND NOTES

- Visit of Chinese Stomatology (64)
- Seminars (67)

發刊에 즈음하여

會 長 李 丙 台



1960년 12월 1일.

바로 大韓齒科醫史學會誌의 誕生日이다.

大韓齒科醫史研究會誌가 첫 이름이다.

1990년.

이젠 30년이 지났다.

1960・1961・1962(이 해부터 “大韓齒科醫史學會誌”라고 되었음)...

그리고는 학회지 발간이란 측면으로만 본다면 22년이란 기나 긴 休眠속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학회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학회지 1・2・3호를 내면서 의욕에 차있던 崔鎮煥 총무의 미국 이민은 본회 학회지 발간에 제동을 걸었으며 會를 구성하는 중간 人脈이 끊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李東燮, 李漢水, 李德一의 결집된 노력은 주효했다.

1983년부터는 매년 1권씩 발행되기 시작했다. 金正均 직전 회장때 부터였으며 필자도 부회장으로 적극 밀었었다.

1983~1989.

이 기간의 학회지에서 보듯이 그 동안 싸이고 싸였던 원고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거의가 모두 모르거나 영원히 接見할 수 없었던 事實・史實・論理들이다.

자, 이젠 년 2회 발간이 실현중에 있으니, 어찌 한 학회의 기쁨으로만 그치겠는가.

齒醫學만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의학 그리고 인접한 여러 학문, 뿐만 아니라 고고학・역사학・인류학과도 연결되고 있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주변 출판물의 변화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예상을 앞당긴 듯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5일 오전 8시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盧泰愚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했다. 참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齒界諸賢의 健勝과 協同을 바라는 바이다.

1990년 6월 20일

누가 더 바깥에 웃으니까!

110 161

신 일 치 과 기 공 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83번지 (광풍빌딩 601호)

TEL. 756-2875, 756-2876

대 표 손 영 수

朝鮮朝末 開化期の 醫學教育

奇 昌 德*

1. 序論

2. 惠民署와 地方의 醫學教育
3. 濟衆院에서의 醫學教育
4. 種痘醫養成所
5. 醫學校
6. 各國 派韓 宣敎醫師들의 醫學教育
7. 濟衆院 醫學校
8. 同濟醫學校와 大韓醫士會 醫學講習所
9. 同仁會의 醫學教育
10. 結論

1. 序論

우리나라에서의 醫學教育은 6世紀 百濟때에 이미 博識한 醫博士들에 依해 醫學教育이 實施되고 있었음을 文獻을 通해 알 수 있고¹⁾ 新羅때에는 體系를 갖춘 醫學校의 設置와 醫書에 依한 醫學을 敎育하고 있었다.²⁾ 高麗가 建國되면서는 太祖가 優先的으로 醫學校를 세우고 醫學敎育을 獎勵하였으며,³⁾ 光宗은 醫科의 科擧制度를 導入하였고⁴⁾ 成宗은 地方에도 醫學校를 設置하였다.⁵⁾ 이러한 高麗時代의 醫學敎育制度는 朝鮮朝에 이르러서도 큰 變遷없이 多少의 改正을 加한 程度로 繼承되어왔다.⁶⁾ 이러한 開化期の 醫學敎育에 關해 官報⁷⁾와 其他 文獻^{8)~20)}을 調査 整理하여 記錄하여 보았다.

*가톨릭 醫科大學 外來敎授, 奇昌德 齒科醫院長, P.F.A. 韓國會 會長

- 1) 三木 榮:〈日本 於 韓醫方〉朝鮮醫學史及疾病史, 醫齒藥出版社, p.23~38, 1972.
- 2) 三國史記 卷 第三十九, 志 第八 職官.
- 3) 高麗史 卷 七十四, 志 卷 二十八, 選舉 二, 學校條.
- 4) 高麗史 卷 七十三, 志 卷 第二十七, 科目 一.
- 5) 高麗史節要 卷之 二, 成宗文懿大王 八年 八月 條.
- 6) 法制處:〈經國大典〉日誌社, 1988.
- 7) 內閣法制局官報課:〈官報〉, 舊韓國 官報 全22卷, 亞細亞文化社 1974.
- 8) 李光麟:〈韓國開化期の 諸問題〉一潮閣, 1986.
- 9) 白樂濤:〈韓國改新敎史〉延世大學校 出版部, 1985.
- 10) 金斗鍾:〈韓國醫學文化大年表〉探求堂, 1966.
- 11) 〈의학백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85.
- 12) 三木 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醫齒藥出版社, 1972.
- 13) 〈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朝鮮總督府醫院, 1928.
- 14) 佐藤剛藏:〈朝鮮醫育史〉佐藤先生喜壽祝賀會, 1956.
- 15) 〈同仁會三十年史〉同仁會, 1932.
- 16) 李鍾毅:〈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 III,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7.
- 17)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京城醫學專門學校, 1935.
- 18) Harrington, F. H. 著, 李光麟 譯:〈開化期の 韓美關係〉一潮閣, 1973.
- 19) 崔棟 譯:〈草創期の 세브란스醫科大學〉朝鮮醫報, 1(7.8), 1947.
- 20) 〈漢城周報〉韓國研究院 所藏本. 〈朝野新聞〉京都人文科學研究院 所藏本.

2. 惠民署와 地方的 醫學教育

經國大典²¹⁾에 中央에는 典醫監과 惠民局에서 醫學教育을 擔當하고 地方에서는 醫學院과 司醫局 掌醫局에서 醫學教育을 擔當하게 되어 있고 醫科試驗에 依하여 醫員이 되는 制度가 그대로 大典通會²²⁾에까지 存續되어 高宗年代에 이르러서도 醫學教育에는 별다른 變動이 없었다. 그러나 惠民署는 高宗19年頃부터 그 機能이 弱化되기 始作하여 職員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程度이고 醫學試驗도 高宗28年以後는 記錄이 없다.

3. 濟衆院에서의 醫學教育²³⁾

甲申政變으로 外傷을 입은 閔泳翊의 西洋醫學의 治療를 擔當했던 當時의 主治醫인 Horace N. Allen이 George C. Foulk(1856~1893) 代理公使를 통해 外衙門 督辦에게 提出한 病院設立案²⁴⁾에 이미 醫學教育의 뜻을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經由로 外衙門 直轄의 廣惠院²⁵⁾을 設立하게 되었을 때에 外衙門에서는 病院開設에 앞서 高宗22年(1885) 4月 3日 病院規則²⁶⁾ 27)을 H. N. Allen에게 傳達하였다.

이 規則은 Allen Paper에만 英語로 記錄되어 남아 있고 外衙門에서 이를 다시 修正 補充하여 公布한 規則을 보면 이 規則의 1, 2條²⁸⁾에는 濟衆院에 있어서의 學生의 授業에 關한 것이다. 그러나 濟衆院으로서는 開院初부터 醫學教育을 實施할 수 없는 與件이어서 外衙門에서는 約 1年後인 高宗23年(1886) 2月 13日에 學生選拔을 爲하여 八道監營에 公文²⁹⁾을 發送하여 “本 衙門의 學堂 즉 同文學과 濟衆院 生徒를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門閥 拘礙하지 말고 聰明하고 勤勉한 14, 5歲로부터 17, 8歲에 이르는 젊은이 3, 4名을 速히 보내 달라”고 하였다. 學生들이 上京하자 全年 3月 29日 濟衆院에 醫學教室(醫學堂)이 設置되었다. 募集된 學生 16名 중에서 4名이 落第하고 12名이 7月부터 醫學教育을 받게 되었다. 教授는 化學教師에 Dr. Allen, 醫師 Dr. Heron, 物理教師에 Horace Grand Underwood로 되어있으나³⁰⁾後에 Dr. Allen과 Dr. Heron은 實用醫學을 가르치고 H. G. Underwood는 우리말(韓國語)로 物理化學을 가르치었다.³¹⁾ 濟衆院의 醫學教育에 關해서는 以上과 같은 記錄은 있으나 濟衆院 醫學教室 出身 醫師나 또는 Dr. Allen과 Dr. He-

21) 法制處：〈經國大典〉日誌社，1988.

22) 韓國古典國譯委員會：〈國譯 大典會通〉高麗大學校 出版部，1960.

23) 濟衆院에서의 醫學教育에 對해 Dr. Allen은 그의 “病院建設案”에 “且有朝鮮生徒亦學西洋醫法”라고만 表現했으나 그후 그의 報告書에서는 “...그 方法으로는 于先 病院內에 醫學講習所를 둔다음...”이라 하였고 또는 朝鮮王室病院 附屬醫學校라고도 記錄하고 있다. 白樂濟의 〈國立醫院의 設立〉에는 醫科教室이라고 했으며 當時의 〈朝野新聞〉에는 醫學堂이라고 指稱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의 外衙門에서는 “濟衆院生徒”로 濟衆院 自體를 教育機關으로 看做하는 “惠民署”와 같은 機構로 取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4) 李光麟：〈病院建設案〉濟衆院 研究에서 引用，韓國開化期의 諸問題，一潮閣，p.115，1986.

25) “命設一院 以廣惠院稱號 令外署專管”〈日省錄〉高宗 22年 2月 29日(陰)條.

26) 李光麟：〈Allen Paper〉韓國開化期의 諸問題，一潮閣，p.133~134，1986.

27) 病院規則은 “...being gotten up by teshiko...”라고 teshiko가 起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의 teshiko는 toshiko의 誤記로 보이며 當時 駐韓日本公使館 所屬 軍醫 海瀨敏行(Umise Toshiko)를 말하는 것 같다.

28) 〈漢城周報〉第2號(1886年 2月 1日)：(公立病院規則)

第一條는 生徒幾員이 每日 學業하는 時間은 午前七時로부터 午後四時에 止하고 休日外에 不得浪游하며 그 精通이 異等하야 衆望이 있는 者는 公薦 表揚하나니라.

第二條는 生徒가 藥을 製合하며 署械等項을 掌하여 醫師의 指揮를 一遵하나니라.

29) 八道監營에 보낸 公文：“關八道監營 本衙門學堂及濟衆院生徒 尚多未備 無論地闊 心擇聰明顯悟勤實之幼童 自十四五歲 至十七八歲 揀取三四人 不日起送入學事”〈統署日記〉高宗23年 1月 10日 條.

30) 〈朝野新聞〉：さきに醫學堂さ濟衆院に設け子弟の英才なるもの十三人を選びて化學英文醫術製藥等の事さ習いしける○其藝道の精通するさ待つて普く世民さ救恤する目的なると云ふ今十三人の姓名さ學ぐれば 木宣植 金鎮成 禹濟翌 李謙? 金重聲 崔奎? 崔鍾岳 尹鎬 李軫鎬 奉學洵 尚? 高濟案 一人欠. 化學教師 安論 醫師 愼論 英語教師 元德馬特. 第382號 明治 19年 7月 29日, p.2, 雜報, 朝鮮通報.

31) 白樂濟：〈國立病院의 設立〉韓國改新教史, 延世大學校 出版部, p.127, 1985.

ron이作成한報告書³²⁾의政府官吏로登用하여主事로任命한다는約束에따른主事に任命된記錄등이없다는것과그들(醫師)의助手로學生을記錄³³⁾한것이보여助手程度의教育으로그치고말았는가한다.여하간에이醫學教室은1889년까지는分明히繼續되었음을알수있다.³⁴⁾

4. 種痘醫養成所

高宗32年(1895)10月7日種痘規則³⁵⁾을마련하고全年11月7日種痘醫養成所規程³⁶⁾이公布되었다.種痘는高宗以前에이미實學者들의依해試驗되어效果에對해서는알고있었으나高宗13年(1876)5月29日修信使金綺秀를隨行한朴永善이大瀧富三으로부터牛痘種法을紹介받고〈種痘龜鑑〉을池錫永에게傳함으로서現代式의種痘法이流入된심이다.³⁷⁾그後池錫永은濟生醫院에서種痘法을實際로實習³⁸⁾하고忠州德山에서韓國最初の種痘施術(高宗16年,1879,12月25日)을實行하였다.³⁹⁾다음해(1880.7)金弘集修信使를따라日本에가서日本牛痘種繼所에서痘苗製造法및其他一切을習得⁴⁰⁾한池錫永은高宗20年(1883)부터는公州,忠州其他地域에牛痘局을設置하고

種痘를實施하였다.⁴¹⁾즉種痘規則이마련된것은池錫永이牛痘局을設置한지15年後의일이다.

種痘醫養成所를卒業한種痘醫들은光武2年(1898)부터漢城五署에各一處씩을마련한種痘所에配置勤務⁴²⁾케하고光武3年(1899)부터는全國13道府에臨時委員으로派遣하여種痘所設立,痘苗製造,痘務廣施등의任務를遂行케하였다.⁴³⁾이種痘醫養成所는修學期間이1個月이지만 오랫동안 많은種痘醫의排出과效率의인成果를얻은우리나라最初の國立醫療教育機關이며光武9年(1905)2月26日廣濟院官制의마련으로種痘司의業務一切은廣濟院의種痘所로移管되고⁴⁴⁾다시이業務가大韓醫院의衛生部로이어지게되지만⁴⁵⁾種痘醫養成所는光武3年(1899)3月24日醫學校의官制가마련되면서醫學校의學科로서編入되었다.⁴⁶⁾建陽2年(1897)봄에는日本人醫師古城梅溪도漢城에種痘醫養成所를設立하고生徒를모아種痘法을가르키어다음해8월까지約30名の卒業生을내었다.⁴⁷⁾

5. 醫學校⁴⁸⁾

建陽元年(1896)1月5日建陽元年度歲入歲出總

- 32) 崔棟 譯:〈朝鮮王室病院 第一年度 報告書(1886)〉〈草創期の 세부란스醫科大學, 朝鮮醫報 1(7. 8), p.99~108, 1947.
- 33) F. H. Harrington 著, 李光麟 譯:〈傳道活動〉(Allen Paper의 4) “4名은 學生으로서 이들에게는 醫師를 돕는 일밖에 도 西洋醫術을 살피는 일이 맡겨졌다.” 開化期の 韓美關係, 一潮閣, p.67, 1973.
- 34) 李光麟: 1889년에 使用한 Underwood의 職銜 “濟衆院教師” 〈“濟衆院” 研究〉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社, p.132, 1986.
- 35) 官報 第184號 內部令 第8號 種痘規則.
- 36) 官報 第208號 勅令 第180號 種痘醫養成所規程.
- 37) 金斗鍾 〈池錫永 및 그一派들의 牛痘種法の 實施〉 韓國醫學史, 探求堂, p.476~479, 1966.
- 38) 三木榮: 〈牛痘種法 普及(半島牛痘種法史)〉 朝鮮醫學史及疾病史, 醫齒藥出版社, p.262, 1972.
- 39) 上揭書, p.262.
- 40) 醫事新聞 第三十號 〈朝鮮修信使〉 學我種痘法, 省軒龜谷翁, 話, p.12, 明治 13年(1880).
- 41) 醫事新聞 八十八號 〈朝鮮醫使談〉 韓地近況, p.23~25, 明治 16年(1883).
- 42) 官報 第929號 內部令 第12號 種痘所規則.
- 43) 官報 第1302號 內部令 第17號 各地方種痘規則.
- 44) 官報 3月 1日 號外, 勅令 第18號 廣濟院官制.
- 45) 官報 第3712號 勅令 第9號 大韓醫院官制.
- 46) 官報 第1307號 學部令 第9號 醫學校規則.
- 47) 金斗鍾: 〈古城梅溪의 贊化醫院〉 韓國醫學史, 探求堂, p.473, 1960.
- 48) 官報나 官의 文書에는 “醫學校”로 되어 있음. 日本人들은 “官立醫學校” 또는 “京城官立醫學校”로表記하고 있으나 設立 運營의 性格上으로 보아 官立이지만 韓國政府에서 使用한 名稱은 “醫學校”이고, 醫學校의 所在地는 漢城이다.

豫算說明⁴⁹⁾에 内部所管으로 第6款에 本年度 新設事業으로 醫學校費 6.906元,(第1項 設立費 3.050元, 第2項 維持費 3.856元) 第7款에는 本年度 新設事業 醫學校附屬病院費 14.353元,(第1項 設立費 4.555元, 第2項 維持費 9.798元) 등 建陽元年度の 事業計劃으로 醫學校와 醫學校附屬病院 豫算이 策定되어 있었다. 그러나 建陽元年度の 計劃은 蹉跌이 생기었는지 實現되지 못하고 光武 2年(1898) 11月 7日 池錫永이 學部大臣 李道宰에게 西洋醫學教育의 醫學校가 急務라는 上書⁵⁰⁾를 한 記錄이 있다. 다음해(1899) 3月 24日 醫學校官制가 制定⁵¹⁾되면서 이어 3月 28日 池錫永이 校長으로 發令되고 다음날 景台協(4月 11日 免職), 南舜熙, 劉泓 등 3名이 教官으로 任命⁵²⁾ 되는 한편 官制에 따라 外國人 教官雇用이 可能하여 5月 4日에는 日本人 醫師 古城梅溪이 教官으로 庸聘⁵³⁾되고 7月 5日에는 醫學校規則이 마련되었다.⁵⁴⁾ 다음해(1900) 1月 12日 沈瑛燮,⁵⁵⁾ 4月 2日 金益南,⁵⁶⁾ 4月 17日 洪鍾德,⁵⁷⁾ 4月 25日 尹泰應⁵⁸⁾ 등이 教官으로 任命되고 5月 22日에는 古城梅溪의 代身 日本人 醫師 小竹武次가 教官으로 庸聘⁵⁹⁾ 되었다. 醫學校는 學部 直轄로 漢城 中部 寬仁坊 勳洞 金弘集 舊宅을 校舍로 하여 문을 열었다.⁶⁰⁾ 授業年限은 速成科로 해서 3個年으로 하고 學科는 簡易 摘要하여 動物, 植物, 化學, 物理, 解剖, 生

理, 藥物, 診斷, 内科, 外科, 眼科, 婦嬰, 衛生, 法醫, 種痘, 體操 등이나 時期에 따라 12科目을 增減할 수 있으며 入學은 每年 春秋學期初에 하고 入學 資格은 中學校를 卒業한 者와 또는 中學 卒業者가 없으므로 文算이 稍裕하고 才智가 聰明한 者를 特試 入學케 하며, 入學 試驗科目은 漢文의 讀書과 作文, 國文의 讀書과 作文 그리고 算術 比例 式答 등이고 第三學年末 全科目의 學力檢定으로 卒業試驗을 보아 合格者는 卒業狀을 授與하고 内部大臣의 醫術 開業免許狀을 付與하게 되어있다.⁶¹⁾ 醫學校의 第1期 學生 募集은 光武 3年(1899) 7月 13日 全年 8月 16日 試驗이 있다는 醫學校學院勸赴廣告를 官報에 掲載⁶²⁾하였고 光武 6年(1902) 7月 12日 官報에는 彙報로 學事欄에 光武 6年 7月 4日 醫學校 第1回 卒業試驗榜이 發表되었다. 優等이 5名, 及第가 14名으로 都合 19名이 卒業하게 되었다.⁶³⁾

醫學校의 附屬病院은 光武 6年 8月 6日 官報에 “本月 11일부터 開院하여 看病한다”는 廣告⁶⁴⁾를 掲載하고 있음을 보아 光武 6年(1902) 8月 11日 開院했음을 알 수 있다. 이 附屬病院에는 日本人 醫師 小竹武次가 招聘되어 있었다.⁶⁵⁾

醫學校는 光武 11年(1907) 3月 10日 大韓醫院 官制의 教育部로 改編⁶⁶⁾ 될 때까지 36名의 醫師를 教育 養成하였으며 日本人 教官 2名外는 韓人 教官

49) 官報 第226號附錄 建陽元年歲入歲出總豫算說明.

50) 三木榮:〈官立(京城) 醫學校 新醫學教育〉朝鮮醫學史及疾病史, 醫齒藥出版株式會社 p.255, 1972.

51) 官報 第1220號 勅令 第7號 醫學校官制.

52) 官報 第1223號 敍任 及 辭令.

53) 金斗鐘:〈最近世醫學文化年表〉韓國醫學文化大年表, 探求堂, p.568, 1966.

54) 官報 第1307號 學部令 第9號 醫學校規則.

55) 官報 第1469號 敍任 及 辭令.

56) 官報 第1539號 敍任 及 辭令.

57) 官報 第1552號 敍任 及 辭令.

58) 官報 第1559號 敍任 及 辭令.

59) 金斗鐘:〈最近世醫學文化年表〉上揭書, p.578, 1966.

60)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醫院 醫育事業〉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 p.48, 1928.

61) 官報 第1307號 學部上揭令.

62) 官報 第1320號 廣告欄.

63) 官報 第2250號 彙報 學事欄.

64) 官報 第2271號 廣告欄.

65) 金斗鐘:〈最近世醫學文化年表〉上揭書, p.585, 1966.

66) 官報 第3712號 勅令 第9號 大韓醫院官制.

에 의해 교육하여 왔다.

大韓醫院 教育部로改編⁶⁷⁾되면서 院長은 內部大臣의 兼職으로 되고 醫員과 敎官으로 分離하여 醫學校의 敎官은 모두 敎育部의 敎官으로 任命되고 廣濟院 醫員은 大韓醫院의 醫員으로 任命되었다. 大韓醫院 敎育部가 隆熙元年(1907) 12月 27日 醫育部로改編⁶⁸⁾됨에 따라 隆熙 2年 1月 1日付로 院長 佐藤 進을 爲始하여 醫官 敎授들이 日本人으로 大舉 任命되고 韓人 敎授는 劉世煥, 劉秉泌, 崔奎翼과 學生監으로 池錫永이 남아 있었다.⁶⁹⁾ 그후 隆熙 3年(1909) 2月 4日 大韓醫院 附屬醫學校로 改稱⁷⁰⁾되면서는 現役軍人 菊池常三郎이 院長으로 赴任하고 韓人 敎官으로는 劉世煥, 崔奎翼의 이름만이 보일 뿐이었다.⁷¹⁾ 隆熙 4年(1910) 8月 29日 大韓帝國 總理大臣 李完用과의 協定으로 韓日은 合併되고 全年 9月 30日 朝鮮總督府醫院의 附屬醫學講習所로 改稱되었다.⁷²⁾

6. 各國 派韓 宣敎醫師들의 醫學敎育

高宗22年(1885) 5月 3日에 朝鮮에 到着한 監理敎의 宣敎醫師 W. B. Scranton도 濟衆院(5月 22日~6月 24日)에서 나와 9月 10일부터 鍾路 自宅에서 極貧者를 爲한 無料 診療를 하면서 그의 病院에 “醫學徒들을 爲한 學校”라 하여 病院에서 必要한 일을 돕는 助手와 藥局員들의 養成을 爲한 醫學敎育을 하고 있었다.⁷³⁾

高宗 27年(1890)에 派遣되어 北監理敎 婦人病院

을 責任지고 있던 女醫 Rosetta Sherwood 嬢이 平壤의 宣敎病院 院長 Dr. W. J. Hall과 結婚하여 高宗 29年(1892) 平壤으로 傳派된 후 Dr. Rosetta S. Hall는 高宗 31年(1894) 5月 平壤에다 婦人病院을 開設하였으나 日淸戰爭과 Dr. W. J. Hall의 死亡으로 Dr. Rosetta S. Hall은 一時 歸國하게 됨으로 Dr. E. Douglas Follwell이 Dr. W. J. Hall의 遺産과 事業을 引繼받고 光武 元年(1897) 2月 監理敎 紀笏病院(The Hall Memorial Hospital)을 設立하여 院長이 되고 그후 美國에서 다시 돌아와 婦人診療所 所長으로 일하던 Dr. Rosetta S. Hall과 醫療助手를 養成하는 醫學敎育을 實施하였다.⁷⁴⁾ Dr. Rosetta S. Hall은 우리나라 女性의 醫學敎育에 많은 功을 남기었다.

7. 濟衆院 醫學校(세브란스病院 醫學校)

高宗 30年(1893) 7月 16日 甲午更張 前年에 카나다 토론토大學 醫學部의 젊은 敎授였던 Dr. Oliver R. Avison이 美國北長老敎宣敎部의 派遣命令을 받고 朝鮮에 到着하였다.⁷⁵⁾ 朝鮮에 到着하자 濟衆院의 責任者가 되었다.⁷⁶⁾ 當時의 政府事情과 Dr. Oliver R. Avison의 主張이 圓滿치 못하던 차⁷⁷⁾에 甲午更張으로 外衙門에서 內衙門으로 移屬⁸⁰⁾되었던 濟衆院이 二次 官制改革후에 濟衆院 官制가 削除⁸¹⁾되고 高宗 31年(1894) 9月에는 濟衆院의 財政을 包含한 모든 運營權이 北長老敎 宣敎部의 醫療事業으로 根本的인 改編을 이루게 되었다.⁸²⁾

67) 大韓醫院 敍任 및 辭令 表-1 附錄 參照.

68) 官報 第3946號 勅令 第73號 大韓醫院官制.

69) 大韓醫院 敍任 및 辭令 表-2 附錄 參照.

70) 官報 第4311號 勅令 第10號 大韓醫院官制.

71) 大韓醫院 敍任 및 辭令 表-3 附錄 參照.

72) 京城醫學專門學校:〈沿革略〉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p.2, 1935.

73) 白樂濬:〈國立病院의 設立〉韓國改新敎史, 延世大學校 出版部, p.127, 1985.

74) 白樂濬:〈敎會의 勃興: 醫療事業〉上揭書, p.347.

75) 白樂濬:〈 上 全 〉上揭書, p.347.

76) 白樂濬:〈 上 全 〉上揭書, p.346.

77) 白樂濬:〈새 宣敎團의 入國〉上揭書 p.200.

7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비슨, 제중원 책임을 맡게 된다〉의학백년, p.37, 1985.

79) 白樂濬:〈宣敎團體의 地方分據: 醫療事業〉上揭書, p.250, (1895年度 報告).

80) 議案 第18號〈內務衙門: 內務府, 吏曹, 濟衆院〉各部衙門所屬各司開錄.

81) 高宗實錄 卷三十三 三十二年 乙未 3月 25日條.

82) 白樂濬:〈宣敎團體의 地方分據: 醫療事業〉上揭書, p.251.

光武 3年(1899)에 學生을 募集한 Dr. Oliver R. Avison은 다음해 光武 4年(1900) 9월에 正式으로 濟衆院 醫學校로 政府에 登錄하고 醫學教育을 始作하였다.⁸³⁾ 當時의 醫學教育은 病院 助手들과 藥劑師들의 養成에서 始作되었으나 醫務擔當 宣教師들이 自己들의 事業場에서 有望한 靑年들에게 實用知識과 技術을 가르치고 授業狀을 주는 慣例로 “未塾한 醫師들”을 만들어 내는 弊端이 있다⁸⁴⁾하여 北長老敎宣敎部는 高宗 7年(1903) “部內 醫務擔當 男子 宣教師들로 委員會를 組織하여 授業證 發給을 管理할 수 있는 規則을 制定하게 하고 教授科目 制定과 畢業試驗 實施와 醫務助手의 資格을 審査 決定하게 하는 案을 決議한다”는 決議案을 採擇하였다.⁸⁵⁾ 그로부터 2年後 光武 9年(1905) 在韓 北長老敎宣敎部의 醫療委員會는 “第8項：2年前에 採擇되었던 在韓宣敎部의 指示에 따라 에비슨博士는 醫學部 課程은 7年制로 藥學部 課程은 3年制로 編成하였다. 이 敎科課程의 謄本은 本宣敎部 醫師들에게 配付하여 明年度부터 그대로 實施할 것. 第9項：세브란스에 在職한 宣教師들이 請願한 助手 12名의 採用과 訓練件은 承認할 것” 등을 報告하였다.

86)

이 措置는 Dr. Oliver R. Avison이 濟衆院의 責任을 맡은지 10년이 지난 光武 9年(1905)의 일로 Ohio州 Cleveland市の 巨富 Louis H. Severance로부터 寄附金을 받아 南大門밖 북송아골(挑洞)에 새로운 病院(세브란스病院 The Severance Hospital)을 新築(竣工 1904. 2. 3)⁸⁷⁾하고 移徙(奉獻式 1904. 9. 3)⁸⁸⁾한 直後로 이 規程은 세브란스醫學專

門學校의 起源이 되는 것이다. 즉 이미 選拔된 學生들에게 이 基準에 맞추어 醫學校에서는 教育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隆熙 2年(1908) 6月 3일에 1899年 濟衆院 醫學校로 入學한 第1期生들이 세브란스病院 附屬醫學校 第1回로 洪鍾殷·金弼淳·洪錫厚·朴瑞陽·金熙英·申昌熙·朱賢則 등 7名이 10年間の 授業을 마치고 卒業을 하였다. 이들에게는 “Doctor of Medicine and Surgery”의 學位를 주었으며 政府로 부터는 正式 認定과 開業免許證이 授與되었다.⁸⁹⁾ 當時(1899~1910)의 教授陣은 Oliver R. Avison, Ph. G., LL. D., M. D., Eva Field, M. D., J. Hunter Wells, M. D., A. M. Scharrocks, M. D., E. L. Shields, R. N.(看護員養成) 등과 Louis H. Severance가 1904年에 보내온 Jesse W. Hirst, A. M., M. D.가 있었고⁹⁰⁾ 敎材로는 Dr. O. R. Avison이 翻譯한 Henry Gray의 解剖學(1868年度版)을 爲始해서 生化學·生理學·藥物學·細菌學 및 衛生學 등을 Dr. J. H. Wells와 Dr. A. M. Scharrocks 등이 翻譯하여 敎科書로 使用되고 있었다.⁹¹⁾ 이 醫學校는 隆熙 3年(1909) 7月 私立世富蘭俾病院 醫學校로 政府로부터 認可를 받았다.

8. 同濟醫學校와 大韓醫士會 醫學講習所

光武 8年(1904) 典醫 洪哲普, 張容駿, 金炳觀 등이 民間의 東醫 李應世, 姜弼周, 趙東浩 등의 發起에 協助하여 醫學校는 西醫學만을 敎育하고 있으니 東醫學을 敎育할 수 있는 大韓醫學校를 設立하기를

83) 延世大學校 醫科大學：〈세브란스의학교〉上揭書, p.56.

84) 白樂濬：〈敎會의 勃興；醫療事業〉上揭書, p.351.

85) 白樂濬：〈 上 全 〉上揭書, p.351.

86) 白樂濬：〈 上 全 〉上揭書, p.351.

87) 延世大學校 醫科大學：〈세브란스씨 기념병원 정초식 기념사〉上揭書, p.52.

88) 延世大學校 醫科大學：〈세브란스씨의 큰 뜻〉上揭書, p.50.

89) 白樂濬：〈敎會의 復興과 發展；敎育事業〉上揭書, p.419.

90) 延世大學校 醫科大學：〈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면서〉上揭書, p.65.

91) 白樂濬：〈敎會의 勃興；醫療事業〉上揭書, p.350에 記錄되어 있으나 現在 保存되어 있는 當時의 敎科書로 짐작되는 醫書로는 〈解剖學〉日本醫科大學 助敎授 金田 策 著, 김필순 譯, 어비신 校閱, 1906年 大韓皇城濟衆院 出版本 1冊(私藏)과 〈外科總論〉김필순 譯述 1冊(韓獨醫藥博物館 所藏)이 보일 뿐이다.

高宗에게 上奏하여 認許를 받아 아주개(唐珠洞)에 卷草閣자리였던 內膳寺를 校舍로 使用許可를 얻어 同濟醫學校를 設立하였다. 教育擔當 教授 選拔에는 洪哲普, 張容駿, 李學浩 등이 考試官이 되어 全國에서 推薦 되어온 教授志望醫들에게 面講(解釋)과 背講(暗誦)으로 〈內經〉〈東醫寶鑑〉〈醫學入門〉을 考試하여 都教授에 金永勳 副教授에 田光玉이 選拔되어 光武 9年(1905) 4월부터 學生 40余名을 入學시키어 東醫學의 教育이 始作되었다. 모처럼 開校한 同濟醫學校가 當時의 統監政治로 難航에 逢着하게 되어 다시 高宗께 奏請하여 高宗의 私用財인 明禮宮의 親用金을 얻어 겨우 教育을 繼續하고 있었으나 高宗께서 退位하고 德壽宮에 遷居하면서 開校한지 3年만에 門을 닫고 말았다.⁹²⁾

隆熙 3年(1909) 8月 젊은 東醫 金永勳, 趙炳瑾(서울), 田光玉(黃海), 張起學(平安), 朴赫東(江原), 李喜豐(忠清), 徐丙琳(大邱), 林炳厚(東萊) 등이 發起하여 全國 東醫들의 結集과 東醫學의 隆熙를 다짐하는 民間團體인 大韓醫士會를 全年 10월에 組織하고 會長에 洪哲普, 副會長에 張容駿, 幹事長에 徐丙孝, 講習所長에 李峻奎 등이 推戴되고 全國 170名の 東醫가 入會하여 東醫學을 繼承하고 西醫學을 攝取하여 兩醫學의 長點을 따서 民族醫學을 創造한다는 目的 아래 隆熙 4年(1910) 7월부터 東西醫學의 講座를 東醫學講義는 朴準承, 徐丙孝가 맡고 西醫學講義는 安商浩, 劉秉珖(醫學校 教官)이 各各 擔當하여 始作하였다. 當時의 教科科目과 教材로 東醫學分野에는 〈皇帝內經〉〈脈經〉〈醫學入門〉〈東醫寶鑑〉등이고 西醫學分野에서는 〈生理學教科書〉安商浩 編(1909), 〈解剖學〉小竹武次 撰 劉秉珖 譯(1907), 〈近世病理學總論〉今裕 述(1911), 〈衛生學問答〉丁福保 編(1906), 〈診斷學〉下平用彩 編著(1904), 〈內科學〉井上善次郎 著(19

11), 〈實用婦人科學〉佐藤勤也 編著(1910), 〈産科學〉今淵恒壽 著(1908), 〈兒科必携〉弘田 長 編著(1909), 〈질만스外科總論〉田代義德 譯(1910), 〈藥物學提綱〉鈴木幸太郎 編(1907), 〈皮膚病學〉筒井八百珠 編著(1911) 등을 가지고 講義하였다. 大韓醫士會는 韓日合併으로 朝鮮醫師會研鑽會로 改稱하고 大正 2年(1913)까지 講座를 繼續하였다.⁹³⁾

9. 同仁會⁹⁴⁾의 醫學教育

光武 8年(1904)부터 大邱에 鐵道囑託醫⁹⁵⁾로 있던 藤繩文順에게 大邱同仁醫院創立事務 一切을 委任해서 光武 10年(1906) 8월에 起工하여 다음해(1907) 2月 10日 開院한 同仁會의 綱領⁹⁶⁾ “第二章 目的 및 事業 第六條 1. 淸韓 其他 亞細亞諸國에 對해 醫學校 및 醫院設立을 勸誘하고 또 이를 設立할 것”이라는 醫療侵略 事業의 一環으로 設立된 醫院으로 于先 內科·外科·眼科·婦人科 등 4個科의 診療를 開始하고 6월에 醫院建物을 増築, 그해 즉 隆熙元年(1907) 9월에 大邱同仁醫院 附屬醫學校 第一期生 30名을 募集하여 3年制로 醫學教育이 始作되었다. 教育을 始作하였으나 여러가지 事情으로 學生들은 거의가 自退하여 새로운 官制의 依한 慈惠醫院의 設立⁹⁷⁾으로 閉校할 때(1910. 9)에는 講學이나 臨床에 素養을 가지고 있는 學生 不過 5名이 在學하고 있었다. 隆熙 3年(1909) 5월에 募集된 第2期 30名은 日本語 其他 豫備教育과 物理學·解剖學 등의 基礎教育중에 慈惠醫院으로 引繼하게 되었고, 이들 大邱慈惠醫院에 引繼된 醫學生中 단 2名이 總督府醫院 附屬醫學講習所로 轉學하였다.⁹⁵⁾

平壤同仁醫院 附屬醫學校도 同仁會의 事業으로 光武 10年(1906) 10月 創立事務를 맡고 있던 中村富藏이 韓國政府로부터 舊監督署를 借用하고 그

92) 李鍾馨:〈東醫學 挽回의 움직임〉韓國東醫學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 III,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p.280~283, 1977.

93) 李鍾馨: 金永勳의 〈備忘錄〉과 〈履歷書〉를 參考하였다함. 上揭書에서 引用.

94) 同仁會:〈朝鮮 滿洲 於 本會 醫院經營 經過〉同仁會三十年史, p.72~77, 1932.

95) 同仁會:〈大邱同仁醫院 事業〉上揭書, p.72~73.

96) 同仁會:〈長岡會長時代:綱領〉上揭書, p.5.

97) 官報 第4737號 勅令 第38號 慈惠醫院官制中 改正.

周邊의 民屋을 買收하여 病室, 事務室을 新築하고 全年 12월에 開院하여 隆熙 元年(1907)부터 醫學教育을 始作한 醫學校⁹⁸⁾로 同仁醫院의 醫師들과 當時 平壤에 있던 衛戍病院의 院長을 爲始하여 軍醫官과 藥劑官의 提携로 3年制의 醫學教育이 始作되었다.⁹⁹⁾ 隆熙 4年(1910) 7月 慈惠醫院 官制 改正에 따라 平壤同仁醫院이 官立平壤慈惠醫院으로 改編⁹⁸⁾되고 다음해(1911) 4月 總督府의 醫育 統一을 圖謀키 爲한 方針¹⁰⁰⁾이라 하여 學生들을 總督府醫院 附屬醫學講習所로 轉學(7名)¹⁰¹⁾시키고 醫學校는 閉校하였다. 當時의 在學生數는 4學年生 8名, 3學年生 7名, 2學年生 6名, 1學年生 36명으로 모두 57명이었으나⁹⁸⁾ 4學年生 9名은 韓日이 合併되자 9月 全員 卒業을 시키고 無試驗으로 醫師免許證을 授與하였고, 그중 3名은 新設되는 義州·春川·光州 등 官立慈惠醫院에 配置하였다.⁹⁹⁾ 日本의 莫強한 醫療侵略 團體인 同仁會의 韓國에 있어서의 醫育事業은 이것으로 完全 撤收하게 되었다.

10. 結論

朝鮮朝末 開化期의 醫學教育은 新羅 高麗때부터 이어지는 惠民署의 醫學教育이 朝鮮朝末에 이르러 開化의 時代의인 變遷에 따라 衰退해지자 西洋醫學의 流入으로 漸次的인 西洋醫學教育이 始作되게 되었다. 즉 池錫永이 個人的으로 部分的인 西洋醫學이지만 種痘醫術의 教育(1880)을 받은 試驗의 時期에 甲申政變으로 西洋醫師 Horace N. Allen에 의하여 濟衆院이라는 名稱아래 惠民署를 革罷하고

그의 對民救療事業을 西洋醫學으로 代置함에 따라 醫學教育도 같이 西洋醫師의 뜻에 依하여 實施(1886)되었다. 이무렵부터 先進列強諸國의 往來에 따라 各 宗教界의 派韓宣教師들은 自己病院에서의 必要에 依해 消極的이나마 醫學教育이 實施(1890)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西洋醫學의 教育은 甲午更張 이후 本格化되어 種痘醫養成所의 設立(1895), 醫學校 官制의 宣布(1899), 醫學校附屬病院의 運營(1902) 등이 實施되었고, 한편 北長老教 宣敎部에서는 醫療事業의 根本的인 改編에 따르는 濟衆院醫學校(세브란스病院 醫學校)를 正式 醫學校(1899)로 發足시키고 隆熙 3年(1909)에는 政府로부터 認可를 받았다.

日本의 顧問政治가 始作되면서 醫學校에도 變化를 가져와 日本人에 依한 西洋醫學이 教授(1900)되고 統監政治때에는 醫學校가 大韓醫院 傘下 醫育部로 改編(1907)되면서 本格的인 西洋醫學의 教育이 始作되었다.

以上과 같은 西洋醫學의 教育은 元來의 東醫學에 對한 疏外 民衆의 慣習의인 東醫學에 對한 愛着과 信賴心이 作用하여 西洋醫學의 發展에는 蹉跌이 發生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우리보다 앞선 日本은 앞에서 말한 顧問政治, 統監政治로 殖民地化에 計略的인 政策에 同仁會와 같은 醫療事業組織을 앞세우면서 醫學教育(1907)도 試圖하고 있었으나 總督府의 醫學教育 單一化 政策에 依하여 세브란스病院 醫學校를 제외하고는 總督府醫院 醫學講習所로 一元化되고 말았다.

98) 佐藤剛藏:〈平壤大邱兩同仁醫院 醫育〉朝鮮醫育史, 佐藤先生喜壽祝賀會, p.20, 1956.

99) 同仁會:〈平壤同仁醫院 事業〉上揭書, p.75~76.

100) 朝鮮總督府:〈醫學教育〉總督府醫院二十年史, p.50, 1928.

101) 朝鮮醫育史에는 平壤同仁醫院 附屬醫學校 4學年生을 全員 卒業시키고 在學生中 7名과 大邱同仁醫院 附屬醫學校에서 2名이 總督府醫院 附屬醫學講習所로 轉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總督府議院二十年史에는 모두 23名이 轉學한 것으로 되어 있음.

〈附 錄〉

表-1. 大韓醫院 韓國側 職員				表-2. 大韓醫院 職員				表-3. 大韓醫院 職員			
光武 11年(1907) 3月 15日付 敍任 吳 辭令	官職	官等	姓名	隆熙 2年(1908) 1月 1日付 敍任 吳 辭令	官職	官等	姓名	隆熙 3年 2月以後 留任 吳 新任	留任官職	新任官職	姓名
院長 (初代)	兼	內部大臣	李址鎔	院長	勅任官 1等		佐藤 進			院 長	菊池常三郎
										副院長	高階經木
教官	奏任官 2等	正三品	池錫永	學生監	奏任官 2等		正三品 池錫永	隆熙 2年 1月 21日 命國文研究委員			
				技師	奏任官 2等		佐佐木四方志	醫官	兼	教授	
				技師	奏任官 3等		齊藤兼次	技師			
				技師	奏任官 3等		田中 守	技師			
				藥劑官	奏任官 2等		兒島高里	藥局長	兼	教授	
				教授	奏任官 2等		小竹武次	教育部長			
				教授	奏任官 3等		久保 武	教授			
教官	奏任官 4等	正三品	劉世煥	教授	奏任官 3等		正三品 劉世煥	教授			
教官	奏任官 4等	正三品	劉秉珖	教授	奏任官 3等		正三品 劉秉珖	教授	全年 3月 1日 免職		
				教授	奏任官 4等		長谷川鮑四郎	教授			
教官	判任官 7級	九品	崔牟翼	教授	奏任官 4等		九品 崔牟翼	教授			
				醫官	奏任官 2等		村上龍藏	醫官			
										醫官	小山 善
										醫官	藤井虎彦
醫員	奏任官 4等	正三品	李丰璿	醫官	奏任官 3等		鈴木兼之助	醫官			
				醫官	奏任官 3等		正三品 李丰璿	?	免職		
				醫官	奏任官 4等		多多見五郎	醫官			
				醫官	奏任官 4等		内田徒志		免職		
				醫官	奏任官 4等		金井豐七		免職		
				醫官	奏任官 4等		矢野兼吉	醫官			
				醫官	奏任官 4等		清水武文	醫官			
				醫官	奏任官 4等		九品 崔國鉉	醫官	兼	教授	
				翻譯官	奏任官 4等		井上鯉一		免職		
				美國人囑託教師 Dr. William B. Scranton.				教授			
				以上 全年 1月 25日(官報 3980號)							
				藥劑官	判任官 2等		坂恒 懋	藥劑官			
				藥劑官	判任官 2等		木村龍吉	藥劑官			
				藥劑官	判任官 3等		鬼頭常助	會計官			
										事務官	石丸言知
事務員	判任官 5級	七品	劉日煥	主事	判任官 2等		七品 劉日煥	助手			
事務員	判任官 4級	六品	金徹周	主事	判任官 2等		六品 金徹周	主事			
事務員	判任官 4級	九品	朴馨來	主事	判任官 2等		九品 朴馨來	?	免職		
				主事	判任官 2等		岡野虎太郎	主事			
				主事	判任官 3等		市川鶴松	主事			
										主事	栗原繁太郎
										主事	垣内鐵太郎
										主事	一家新吉
醫員	判任官 3級	六品	皮秉俊	助手	判任官 2等		六品 皮秉俊	隆熙 2年 7月 13日 免職			
藥劑官	判任官 4級	九品	李應遠	助手	判任官 2等		七品 李應遠	隆熙 3年 1月 29日 免職			
藥劑官	判任官 4級	六品	金相燮	助手	判任官 2等		六品 金相燮	上 全 日 免職			
				助手	判任官 4等		細川亮吉	助手			
				助手	判任官 5等		康晚植	助手			
										助手	丹羽藤之助
										助手	安中明太郎
										助手	所初太郎
										助手	吉尾 學
藥劑官	判任官 4級	六品	權泰完	助手	判任官 5等		尹泰夏	免職			
				技手	判任官 4等		門 義雄	免職			
通譯官	判任官 7級	九品	李殷揖	翻譯官補	判任官 4等		九品 李殷揖	免職			
				翻譯官補	判任官 4等		九品 朴泰吉	免職			
				翻譯官補	判任官 5等		九品 扈根夏	免職			
以上 全年 3月 25日(官報3722號)				以上 全年 1月 13日(官報3969號)				以上 總督府醫院 二十年史 p.10의 表를 官報에 依해 修正함.			

Medical Education in the Enlightenment Period in the Late Era of the Yi Dynasty

Chang-Duk Kee, D.D.S., D.M.Sc.

Visiting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Records tell us that, toward the sixth century in the Paek-Che Kingdom, medical education was conducted by erudite medical scholars called Ui Bak Sa(醫博士) and that, in the Sin-la Kingdom, systematic medical education was provided using textbooks in formal medical schools (692)

Soon after the founding of the Ko-Ryo Dynasty, King Tae-Jo placed emphasis on medical education and established medical schools(930). King Kwang-Jong initiated a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for medical doctors(958), and King Song-Jong went one step further and set up medical institutions even in rural areas(989).

The Yi Dynasty inherited the medical educational system of the Ko-Ryo Kingdom with only minor changes made. However, in the era of King Ko-Jong, the rapid changes, social and political, along with the influx of foreign influence made it necessary for the nation to shift, in keeping pace with the advancing current of the world civilization, from the system of Oriental medicine to that of Western medicine.

In this study, the author reviewed official gazettes and pertinent documents, and summarized records therein regarding the medical education of the enlightenment period of the Yi Dynasty.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hen Chi Sok-young received private training for smallpox vaccination(1880)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if partially, Western medicine, the Kap-Sin Political Reform provided Dr. Horace N. Allen with an opportunity to renovate the Hay Min So (House of Civilized Virtue) into the Chei Chung Won(House of Universal Helpfulness) and initiate the work of replacing the Oriental medical service system with the Western medical system.

At that time, upon Dr. Allen's recommendation, the Government adopted a new education program for Western medicine(1886), discarding the old educational system of Oriental medicine which had been practiced until that time. About that time, many missionaries came to Korea

and established hospitals where they taught Korean students Western medicine(1890).

The Kap-O Reform ushered in a period of a full swing of Western medical education, which was marked by the establishment of a vaccination doctors training center(1895), the proclam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medical school(1899), and the opening of hospitals attached to the medical school(1902), etc. And the missionary department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in keeping pace with the radical reform of the medical service system, elevated its medical school to a full-dress medical college under the name of Severance Medical College (1899).

Meanwhile, with the start of the rule by Japanese advisors, medical education began to be provided by Japanese professors(1900). During the rule by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the Medical school was reorganized into the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Uiyukpu 醫育部) of the Tae-Han Hospital(1907). This is the beginning of full-seale Western-style medical education.

It is to be noted that, despite the gavernment policy of alienation of Oriental medicine, the general public's preference for and trust in Orental medicine consitituted a considerable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Western medicine in this country.

Meanwhile, Japan, which was bent on colonizing Korea by means of rule by advisors and the Governor-General, began to carry out medical education(1907) through various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Tonginhoe(同仁會) and finally, under the policy of unifying the medical educational orgnizations, integrated all the medical schools, except Severance Hospital Medical School, into the Medical Doctors Training Institute of the Government-General Hospital of Cho-Sun.(朝鮮總督府醫院 醫學講習所)

世界 近世齒學史(豫稿)

金正均 朴勝五 金官興 共同執筆

전호에 이어 본호에 게재된 세계 치학사에 관한 종설(예고)은, 세계 치학사에 대해서 그것을 보다 간결히 요약해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이것은 차후 다시 수차 정리되면서 보다 그러한 의도에 적합한 내용이 될 줄로 안다.

편집부 주

명대(明代 1368~1662년)의 치과의학은 내용적으로 금대와 원대의 계승 내지는 그 연장이다. 그러나 그 학문의 보급면에서는 일찌기 볼 수 없던 많은 융성을 보였다. 당시의 의사로서 손꼽힐 사람들만도 무려 914명에 달했던 사실은 청대(清代)의 「의술명류렬전」(醫術名流列傳)에도 기재되었다. 그들의 저술도 많은데 그것은 거의 모두 방대한 내용의 책들이다. 하지만 그 의서들은 독창적 내용까지는 지니지를 못하였다. 즉 그것들은 거의가 전통적 의학의 고수로 시종하였다. 다만 특기할 점은 각 분과별인 연구가 활발히 되어 특수 질병의 전문 의사가 배출된 일이다. 이를테면 외과의 진실공(陳實功), 두진(痘疹)의 옹중인(翁仲仁), 온역(瘟疫)의 오유성(吳有性) 등이다.

명대의 유명한 의서로 손꼽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4종이 있다.

「상한론조변」(傷寒論條辨 方有執 8권 1592년)

「본초강목」(本草綱目 李時珍 52권 1596년 120권)

「증치준승」(證治準繩 王肯堂 6종 1598년)

「유경」(類經 張介賓 32권 1624년)

청대(清代 1663~1911년)의 치과의학은 명대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

청대의 의서로는 「어찬의종금감」(御纂醫宗金鑑

吳謙 90권 1794년)이 있다. 본서는 칙찬의서로서 의학전서이다.

Matteo Ricci(16~17세기 초, 伊)는 근세 중국 과학의 창시자라 불리운다. Ricci로부터 시작된 명대 말부터 청대 초에 걸친 서양의 근세 과학의 수입은 중국 문화사상 획기적 사건이다. 이때에 비로서 서양의 해부학과 생리학이 널리 그리고 상세히 소개되었다.

중국 최고(最古)의 한문(漢文)으로 된 서양의 서는 1640년에 나왔다. 「태서인신개설」(泰西人身概說 Jean Terrenz 1576~1630년 鄭玉函 2권 1625년 경)이다.

그리고 그후 계속 「인신도설」(人身圖說 Jack Rho 2권 1650년 末刊行)과 「목사도설」(目司圖說 Verbiest 17세기) 등의 기초의학 의서가 나왔고, 17세기 후반부터 역시 신부들에 의해 서양 임상의술이 소개되었다.

근세 중국에 최초로 서양 의학에 의한 병원 및 서양 의학 교육기관이 개설된 때는 1835년이다. 미국인 선교사 Peterr Parker에 의해 광주(廣州)에 기독교병원이 설립된 때부터이다.

19세기에는 서양 의학이 더욱 활발히 소개되어, 선교의사 영국인 Benjamin Hubson(合信)은 1839년 중국에 와서 많은 저술을 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알려졌다.

「전체신론」(全體新論 1권 1851년)

「박물신론」(博物新論 3권 1855년)

「서의략론」(西醫略論 4권 ?)

「부영신설」(婦嬰新說 ?)

「내과신설」(內科新說 ?)

명과 청의 치과의학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발달되었으며, 동시에 어느 정도로 서양 치과의학을 인식하였는가하는 점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저자로서는 추정하기를, 18세기 중반에 중국은 당시의 서양 치과의학의 학문적인 개요를 거의 모두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임상적 의술도 일부는 습득했었으리라 생각한다.

유럽의 근세 치과의학은 16세기에 이르러 해부학 외과학 부문에서 활모할 발달을 보았다.

Andreas Vesalius(1514~64)와 기타의 해부학자는 치아의 해부 및 생리학적 지식을 보다 정확히 밝혔고, Ambroise Pare(1517~90)는 구강외과학에 새 기원을 열었다. 전자는 치근의 수를 정확히 하였으며, 치수강의 존재와 그 의의를 확실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과용 학술용어 등에서도 그 명명에 새로운 시도를 가했다. 후자는 새로운 구강외과용 기구의 고안은 물론 치아재이식술과 전치부위 가공의치의 제조법 또는 치아우식증의 충전법 등에 새로운 술법을 개척하였다.

16세기 유럽에서 순수한 치과의학 전문서적이 최초로 나온 때는 1544년이다. 독일의 Walter Hermann Ryff(?~1570)는 독일어로 구강외과 임상과 구강위생에 관한 기록이 담긴 2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학술서적인 책명은 Zahnarzneybuchlein으로서 치과서적으로서 기리 남는 이름이다. 여기에는 그가 사용한 수술용 기계도 도해되어 있다. 그 후 치과전문서적은 프랑스에서 1582년 Urbain Hermard에 의해 나왔고, 또 스페인에서는 1557년 Franciscs Martinez에 의해 나왔다. 순수한 치과해부학서적인 Libellus de dentibus가 Bartholomeus Eustachius(?~1775, 伊)에 의해 출판된 때는 1563년으로 그 내용은 각 부분에 걸쳐 거의가 완전한 것이기도 하다. 16세기 유럽에서 출간된 치과전문서는 20여종에 달한다. 이리하여 치과의학이 일반 의학으로부터 독립된 전문분과로서 그 발달을 보게 된 점은 크게 기억될만 하다.

17세기 유럽의 치과의학은 임상기술면에서 더욱 발달을 보였다. 이때의 치과전문 학술서적은 약

100종에 이르렀다. 그러나 치아우식증의 원인은 아직도 벌레에 의한 것이라 신봉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17세기에 치과의학의 새 기원을 보인 수술법으로는, 치아재이식수술의 응용으로 Dupont가 치통료법을 꾀한 점, 발치후의 출혈을 압박지혈법으로서 Lazare Riviere(1589~1655), Nicolaus Tulp(1593~1674) 등이 성공한 점, 그리고 Matthias Gottfried Purmann(1648~1721)가 의치 제작에 있어서 모형을 이용하기 시작한 사실, Anton Nuck(1650~1692)가 하마(河馬)의 치아를 조각하여 인공치아를 만든 것, 이어 Guillemeau가 광물성 치아를 최초로 제조한 일들은 모두 지적될만 하다.

여기 더하여 Antoni Van Leewenhoek(1632~1723)가 현미경을 이용해서 치아의 상아질에는 치세관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사실과, 또 치구에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것도 기리 남을 업적이다.

18세기 유럽의 치과의학은 곧 그의 황금시대이다. 치과의학은 완전히 독립된 전문분과로서 발달되었다. 그것이 가장 발달된 중심지는 프랑스이다. Pierre Fauchard(1678~1761), Guillemeau, Mouton(1746~86), Duchateau(藥師) 등은 각기 보철부문의 업적을 남겼다. Fauchard는 곧 근세치과의학의 아버지로서 숭앙된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는 치과보철학에서 큰 발달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다소 그 발달이 뒤졌으나 아산화질소가스에 의학 마취법의 연구가 1776년 화학자 Joseph Priestley에 의해 실험되어, 그 후 1844년에는 미국의 치과 의사 Horace Wells(1815~45)가 그 자신이 실험제가 되어, 발치를 시도하게끔 하는 최초가 되기도 했다. 외과의사 Ben Jamin Bell은 상악 제1~2 대구치를 발거하고 상악동질환의 치료를 시도해서 성공하였다.

미국 치과의학은 18세기로서 여명기를 맞는다. 그리하여 유럽과 미국에는 직업적으로 독립한 치과전문의사가 서서히 배출되어, 19세기에는 치과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작되었고 유럽 각처에

서도 그후 계속 설립을 보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유럽 치과의학을 대표하는 치과전문 의서는 1728년에 출간되었다. 곧 Fauchard의 Le Chirurgien Dentiste(外科齒科醫)이다. 863페이지에 달하는 본서는 상하 2권으로 방대한 각 분야에 걸친 저술이다. 또한 그가 17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인 치과의사 개업시험 제도를 실시케 한 업적도 기억될만한 사실의 하나이다.

19세기 세계 치과의학의 발달은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으로부터 점차 미국으로 그 발달의 중심이 이전되어 마침내 그것이 미국대륙에서 장족의 진보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교육기관이 설립된 때가 1835년으로, 그 교명은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이며, 그 설립자는 Horace H. Hayden(1769~1844)이다.

이어 미국 치과의사회가 창설된 때는 1841년이며, 치과의학 관계 전문잡지가 세계 최초로 나온 때는 1839년이다. 그 발행자는 Chapin A. Harris인데 이 잡지가 1841년에는 미국 치과의사회의 기관지가 되었다.

19세기 치과의학 발달에 큰 계기의 하나가 된 것은 마취에 의한 발치의 성공이다. Horace Welles(1815~45)가 소기까스의 마취로 발치에 성공한 때는 1844이다. 또 하나 아말감합금에 성공한 이는 Green Vardiman Black(1836~1915)로서 1896년이다.

유명한 치아우식증의 병원에 관한 화학세균설이 Willoughby D. Miller(1853~1907)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된 때는 1883년인데 이러한 갖가지 많은 연구가 계속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 점은, 당시의 그곳 치과의사들이 미국대륙 개척기의 호경을 맞

아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것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힘써 일찍부터 교육기관을 설립한 사실, 또 유럽으로부터 이민간 치과의사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적극적이었던 점과 더불어 유명인사가 치과의사가 되던가 혹은 치과의사들 중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계속 배출된 까닭이다.

근세 한국의 치과의학을 대표하는 책은 「동의보검」(東醫寶鑑, 許浚, 25권 25책, 1613)이다. 본서는 당시까지의 중국 의서 72종과 국내의 의서 3종을 참고로 하였다. 그중 치과의학 관계로서 참고가 된 문헌의 수는 44종에 달한다.

본서의 치과 관계 기사는, 구강해부학, 구강병리학, 구강진단학, 구강생리학, 치아형태학, 구강외과학, 구강치료학, 구강보건학, 소아치과학, 치과약리학, 치과조제학 그리고 치과침구학 등 약 12개 분야에 걸친다.

본서에 수록된 치과 질환(병증)의 수는 약 64종이다. 그중에서 치아 관련의 그것은 약 26종이고, 구설(口舌) 관계의 것은 약 38종이다. 그리고 치과용 처방(약방)의 수는 약 280종이다. 그중 단방(單方)은 59종이 된다.

치아우식증의 발생 원인은, 음식물의 부패된 기(氣)가 구멍을 발생시켜 그안을 벌레가 파먹는 까닭이라 하였다. 치통은 7종으로 분류되었다.

조선시대의 치과의학은 대체로 세종조인 15세기 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가 그 발달의 전성기이다. 그 내용은 경험주의에 보다 입각한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것이다. 분야별로는 외과적인 방면에서 보다 발달을 보였다.

그 의설은 17세기 후반부터 서양의학의 인지 내지는 영향으로, 당시까지의 전통적이며 숭고적인 사상으로 오직 대대로 계승되어 왔던 그것에 대한 회의를 서서히 품게 되었던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齒科界團體活動(7)

辛 在 義*

1940年 9月 15日 午前 8時 30分에는 朝鮮齒科醫學會 第21回 總會 및 學術講演會를 開催하였다. 京城帝國大學 附屬醫院臨床講義室에서 時局을 反映하여 國歌제창, 宮城遙拜 皇國臣民의 선서 後에 會議가 進行되었다.

新役員으로는 會長에 生田信保, 副會長에 廣賴清, 渡辺定雄이 被選되었다.

總17演題中 韓國人은 金鍾元, 潘泰攸, 李迴柱, 3人이 5개의 演題를 發表하였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三叉神經痛樣齒痛을 伴へる生齒障礙症の一例-金鍾元(城大齒科)
2. 朝鮮咸鏡北道吉州溫泉地方に發生せる 地方性齒牙疾患の一例に就て-潘泰攸(城大齒科)
3. 上顎無齒患者の下顎骨々折の一例 - 李迴柱(城大齒科)
4. 齒牙萌出障礙としての流唾症の一例-潘泰(城大齒科)
5. 下顎骨切除補綴裝置の二例-李迴柱(城大齒科)
6. 癩患者齒髓に於ける病理組織學的變化に就て-平下證(小鹿島更生園, 城大齒科)
7. 實驗的下癩症に於ける齒牙及其支持組織の變化に就て-大脇博人(城大齒科)
8. 蔗糖過剩投與の二, 三臟器に及ぼす影響に關する研究補遺-今尾勝己(城大齒科)
9. 酸類及蔗糖過剩投與によりて二, 三臟器に現はれたる變化の比較-今尾勝己(城大齒科)
10. 齒齦アメノハノ(Entamoeba Gingivalis) に就て-城大助教授 田辺操博士
11. 再び咬合不全症と胸部異狀との關係に就て

- 内田操男(羅南醫院)

12. 口蓋に發生せし巨大なる纖維腫の一例-愛川 隆(京城醫專齒科)

13. 「ズルフオンアミバ」劑の 副作用に就て-廣潔清(京城醫專齒科)

14. 矯正期を失せる患者の齒列矯正例に就て-愛川 隆(京城醫專齒科)

15. 砂糖の白鼠成長に及ぼす影響に就て-京城醫專教授 廣川幸三郎博士

16. 固定架工義齒の調製に就て-東京齒科醫專堀江 銑 教授

17. 特別講演「オノギン」の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熊本高島義人學士

1940年 9月 22日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講堂에서는 第8回 京城齒科醫學會가 열렸다. 戰時를 反映하는 宮城遙拜 皇國臣民의 선서같은 內容이 會順에 포함되었으며 總 36演題中 韓國人은 鄭保羅, 朴明鎮 2人이 2개의 演題를 發表하였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弗化「カルシウム」投與時に於ける家兎齒牙並に顎骨内「ウカルシウム」及び燐の消長に就て-堀 武(京城)
2. 前齒部に於ける埋伏齒の出現率と是に因る正中離開に就て-河野暢雄(京城)
3. 智齒の肉眼的視察に就て, 其の一, 成年期に於ける 智齒萌出率に就て-千田英三(京城)
4. 智齒の肉眼的觀察に就て. 其の二, 成年期に於ける智齒の咬合關與率に就て-横山五郎(京城)
5. 化膿性齒牙炎に就て-牧山正文(京城)
6. 骨髓製剤による血小板增多機轉-平岡彌之

*신재의치과의원장, 大韓齒科醫史學會副會長

助(京城)

7. 原瀬式無熱超短波紫外線(冷右英燈)の効力に就て-牧山正文,横山五郎,千田英之,河野暢雄(京城)

8. 二,三「イソヒノソン」核誘導体を主剤とせる鎮痛薬の薬効に就て-森藤陽三(京城)

9. 多様永久歯先天性缺除に乳歯晩期残存を件なへる興味ある一症例に就て-窪盛(大阪)

10. 上顎中切歯の捻転埋伏し然も切端に於て吸收窩を認めし興味ある一症例に就て-今村汎(京城)

11. 乳歯列に發現せる倭小歯の二例-今村汎(京城)

12. 下顎小旧歯に觀たる倭小歯に就例にて-森哲朗(京城)

13. 左記條件有する場合に於ける合理的と思惟せらるる緩壓固定「ブソシデ」の調製法

一、製作に急を要し支臺な健全にして失活するに違なき場合

二、支臺齒甚しく傾斜し到底従来の固定「ブソシデ」の裝置不可能なる場合-平澤滿世(奉天)

14. 「パラヂウム」Sによる模型供覧-樺島益弘(京城)

15. 「パラヂウム」Sの使用法-安田正浩(京城)

16. 義齒床用材料の推移-(來賓)松風陶齒製造株式會社技師-宮津(京都)

17. 臨床的に觀たる各種義床材料に就て-(特別講演)新京市民病院齒科醫長醫學博士 渡辺悌(新京)

正午休憩

午後之部(午後一時講演開始)

18. 上顎前部齒舌面に發現せる齒牙結節の三例に就て-今村汎,山根登(京城)

19. 石膏分割器に對する一考案に就て-金岡

正兼(晋州)

20. 根管充填の到達率に就て(第三報告)-廣江達雄,中村正一(京城)

21. 解剖學上より考察する下顎伝達麻醉に就て-桑山邦松(京城)

22. 齒牙と上顎洞の關係(特別講演)-大阪齒科齒學專門學校教授ドクトル 松岡操(大阪)

23. 口腔内殘渣に關する研究-窪盛(大阪)

24. 齒科用藥劑の殺菌力に關する研究 第一報告根管内に使用したる藥劑の殺菌力に就て-廣江達雄,松田春一(京城)

25. 保存齒科用藥物の竄透性に關する研究特に竄透性に及ぼす温度の影響に就て-矢尾太郎,住友武久(京城)

27. 總義齒の陶齒排列方法に就て-鄭保羅(京城)

28. 蒸和籠の排氣凝集裝置に就て-岡田正(京城)

29. 赤血球代謝に於ける肝臟の意義-平岡彌之助(京城)

30. 口蓋補綴に就て-河崎正信(京城)

31. 「サルバルサン」の中毒臨床治驗例に就て-河崎正信(平壤)

32. 顎機能矯正法の適應-横田成三(京城)

33. 無處置齒々小管内に於ける金屬分子の遊出に就て-牧山正文(京城)

34. 關節盤の年齢的變化に就て-稻川英一(京城)

35. 金屬裝劑の齒牙及び口腔附屬組織内吸收に關する實驗的研究-朴明鎮(京城)

36. 朗科領域に於ける「クロナキシー」の應用(特別講演)-大阪帝國大學醫學部助教授醫學博士 永井巖(大阪)

1940年9月14日에는 朝鮮總督府에 의하여 組織 管理되는 朝鮮齒科醫師會 第17回 總會가

京城府 北米倉 YMCA會館에서 東京齒專校 教授堀江銑一博士의 特講가 함께 열렸다. 이 特講의 演題는「顎堤의 吸收と 陶齒排列との 關係に就て」이었다.

1940年 후반기에는 齒科醫師도 事業所得稅를 稅法의 改定에 의하여 齒科醫師, 醫師, 婦護士, 著述家等の 現行法에서는 非課稅로 되어있는 自由職業者의 所得에 一定稅率의 稅金을 내도록 하였다.

이 1940年 후반기에는 朝鮮聯合齒科齒師會 內의 各地에 會長이 바뀌었다.

全州齒科醫師會長 高漢俊

鎮南浦齒科醫師會長 小島豐藏

釜山齒科醫師會長 清水繁雄

大邱齒科醫師會長 中川正哲

1940年 6月14日 午後7時에는 京城齒科醫學會 6月例會가 齒科醫專 3층 階段教室에서 아래와 같은 演題로 열렸다.

1. 無處置齒齒小管内に於ける金屬分子の 遊出に就て- 牧山正文

2. 「アンドレノゼン」氏의 所謂機能的 顎矯正法に就て- 横田成三

3. 防毒指導者講習會に出席して- 山上一喬, 齊藤鶴雄

1940年 7月6日 午後7時30分에는 京城齒科醫學會 7月例會가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3층 階段教室에서 아래와 같은 演題로 열렸다.

1. 下顎管内に於ける血管及び神經の走行狀態に就て- 稲川英一

2. 「パラヂコノム」S의 臨床報告- 弘田精一

3. 現時逼迫せる齒科材料의 供給問題に就て- 松風陶齒株式會社 社長 松風憲二

4. 「파우ヂ코노ム」合金의 合理的使用に就て- 松風陶齒株式會社 技師- 宮津一

1940年 후반기에는 各道를 單位로 하는 道齒科齒師會가 總督府의 統制下에 設立되기 始作하였다

1940年 10月6日에는 全南道齒科齒師會가 11月에는 平南道齒科醫師會가 11月30日에는 江原道齒科醫師會가 設立되었다.

實錄1990년－專門齒科醫師제도 攻防

李 丙 台

*

목 차

서 론

1.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종수
 2. 전국회원 여러분
..... 전문치과의사제도 시행 반대추진위원회
 3. 專門齒科醫師 制度에 관한 大韓口腔顎顔面外科
學會의 見解 金宗源
 4. 전문치과의제도의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5.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전문치과의제도 반대 서울시추진위원회 위원장
..... 최재경
 6. 전문치과의사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며...
..... 공직치과의사회장 이종갑
 7. 전문치과의 제도 추진경위
.....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
 8. 전문치과의사 제도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개정(안) 대한치과의사협회
- 요 약

서 론

1990년의 치과계는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조용했지만 속은 뜨거웠는지 모른다.

서울의 경우에는 각교에서는 齒會長의 선출과 임원개선, 이어서 서울特別市 會長의 선출과 임원개선 그리고 大韓齒科醫師協會會長 선거는 제일 큰

行事며 事件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선거에 있어서 있었던 얘기가 그 정황을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거와 더불어 느닷없이 격론을 벌리게 된 문제가 있어서 1990년의 전반기를 기록하고자 함이다.

명칭도 ‘치과전문의(사)’에서 ‘전문치과의사’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자의 75%가 전문치과의사제도 실현을 반대했고 25%가 찬성했다.

단체나 집단의 흐름은 그 구성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면서 관련된 집단이나 인접 구성인들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될 것이다.

특히 과반수·종다수 등으로 결정된 事案이 일사천리로 실시되어야 함은 일의 추진력이되, 부결·반대 의사쪽의 소수 의견도 존중되는 것이 민주사회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990년 전반기에 크게 논의되었던 전문치과의사제도에 대한 인쇄물로 된 각 단체의 견해를 수집하여 게재하였다.

1. “전문의 수련 및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국회원 여러분 !

대망의 경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간에 정부에 의하여 발표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경희시대 외래교수·대한치과보철학 회원·월간 치과연구 편집인·이병태 치과의원장.

법예고와 관련하여 회원간에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일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간의 경위와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1. 입법예고된 상기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 치과의(치과전문의)제도 시행여부에 대한 것이나 실시과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련기간, 수련기관의 시설에 관한 것과 이 제도가 없어서 수련을 받지 못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설치하는 것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입법예고의 목적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개정안 부칙 전문의 시험자격 기준에 대한 사항중에 “치과의료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군경력, 공중보건의 및 대학원 경력포함)로서 치과의사 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필한 자”에게는 수련의와 동등한 자격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2. 전문치과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경위는, 약 30년전부터 계속되어온 치과계의 노력으로 현행의료법(1973. 2. 16) 제55조에 그리고 대통령령(1976. 4. 15)인 “전문의학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5개 전문과목(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을 규정되어 있으면서 단지 지금까지 그 시행을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1982년부터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요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1982년 및 1988년 정부의 법령 및 행정업무의 정비 간소화 지침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은 법률 등은 폐기하겠다는 보사부의 의견조치에 따라 집행부로서는 현행법과 규정 등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그간의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토대로 전문치과의 제도의 시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보사부는 현행규정(보사부령)에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할 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3. 대통령령인 “전문의학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2항 및 보사부령인 “전문의학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1항에 의하면 전문의 시험은 보사부장관이 치과의사협회로 하여금 실시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실시를 주관하게 되는 치과의사협회에 실시시기 또는 합격자수의 조정 등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봐서 그 당시의 집행부는 많은 연구와 함께 반드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국회원의 뜻에 어긋나는 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4. 전문치과의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의 5개 전문과목을 1-2개 과목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10개 과목으로 늘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전문치과의 제도 자체를 폐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나 주장들은 현재 입법예고된 “전문의학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다른 차원의 별개 문제로서 앞으로 개원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의료법개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 집행부는 금번 입법예고에 대하여 법,령 등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면서 시행규칙(보사부령)의 미비로 사문화 되어 있던 것을 보완함으로써 전문치과의 제도자체를 치과계의 기득권으로 확보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폐기하기는 쉽지만 다시 제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치과의 제도는 현행의료법과 대통령령 및 보사부령의 규정에 의한 것을 경과조치로 보완하여 받아들여 놓고 앞으로 실시할 때에는 많은 연구와 중지를 모아서 일반 의사들의 경우와는 다른 우리에게 맞는 새 모델을 개발하여 전문의 제도의 장점은 살리면서 이 제도로 피해를 입는 회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나 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누구
도 맞지 않는 제도의 실시를 강요하거나 강요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국 회원의 뜻을 대의원총회에
모으고 그 결정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은 너
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의 의도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90. 1. 29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 중 수

2. 전국 회원 여러분 !

1990년 1월 29일 이중수 치협 회장 명의로 전 회
원에게 발송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
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하여”란 글에 대한
여러 회원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코저 이 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

치협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만이 그 존재 가치
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치협집행부는 회원의 뜻
에 따라서 회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나 치협은 전문치과의제도라는 우리에게는 생소
하지만 이해 관계가 깊은 제도를 시행 추진함에 있
어 회원의 의사와는 반대로 이를 알리지 않고 시행
을 추진하여 보사부로 하여금 입법 예고까지 하기
에 이르렀습니다. 치협은 1982년도 치협 대의원 총
회에서 전문의 제도의 시행을 의결 하였다고 주장
하나 82년도 총회에서는 200여명 대의원 중 56명
만이 남은 상황에서의 가결을 적법한 의결이라 할
수도 없거니와 더구나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82년도의 총회 결의를 근거로 전문의 제도를 시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현재의 치협 집행부로서는 억지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전문의제도 시행 여부를 회원
들 의견 종합에 의해서 이를 존폐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치협 집행부는 1989년
1월 21일 전문의 제도 시행 규칙제정을 보사부에
건의하여 1989년 2월 1일 보사부로부터 “학계 및
개원 의사들이 참여한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집약된 내용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
청 받고도 회원에게는 그 사실조차 숨기고 여론 수
렴 과정도 생략 하고 1989년 2월 28일 마치 전체
회원들의 집약된 의견인 양 1984년 4월 대치 대의
원 총회에도 이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않고 보사부
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회원들을 소외시키고 은밀하게
시행을 추진하여 입법예고를 방관하면서 마치 전
회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습니
다.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회무를 수행해야 할 치
협 집행부가 이토록 회원을 무시하고 우롱할 수 있
습니까?

입법 예고란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결코 의견 수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
다.

전문치의제도 담당 치협 학술 부회장이 치과신
문(1989. 12. 15일자)과의 대담에서 “전문의 제도
는 90년에 입법 예고하고 91년에 시행토록 하겠으
며 어떠한 회생을 치르더라도 내 임기중에 시행토
록 하겠다.”고 시행 결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안의 경과규정(부칙)은 제1회에 한하며 소멸
되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가 거세지
니까 치과의사 자격 5년경과 한 자에게도 응시 자
격을 부여한다고 여론을 진정 시키려는 저의가 숨
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회 활동 8년 또는 10년 경과한 자로
한다더니 현재는 개원 5년 경과자로 응시자격을
주겠다고 하니 이는 치협이 전문의 제도에 대한 원
칙도 없이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무계획성이 드러
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치과계 실태로는 수련의 수용 능력이
전체 치대 졸업생의 15% 정도(의과대학 졸업생의
95%)라는 것을 치협이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
다. 미시행 하는 법률을 정비 하겠다는 보사부 통

보에 따라서 치협은 전문 치과의 제도의 법 폐기 방지와 이 제도 자체를 치과계의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추진 위원들이 보사부를 방문하여 담당관에게 확인한 결과 치과전문의 제도가 법률에만 있고 미시행되어도 보사부 당국은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며 결코 법조문 자체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을 폐기 하기는 쉬워도 재 제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치협이 이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다시 회원을 기만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반대하고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치협은 이 제도의 시행 추진을 즉각 중지하여야 합니다. 치협은 회원의 동의 없이는 이 제도의 시행이 불가능 하다면 법 제정을 하여 놓고 그 시행 여부를 회원에게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도 시행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정된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적합한 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역대 집행부가 무능해서 30년이 지나도록 전문의 제도를 시행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치과계는 전문의 제도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치대 출신문제, 의료보험 수가 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 시급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회원들의 치협 집행부에 충고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1990. 2. 12

전문치과의제도시행반대추진위원회

專門齒科醫師 制度에 對한 大韓口腔顎顏面外科學會의 見解

전문치과의 제도는 이미 1962년 3월 20일 제정

된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시행규칙 16조 등이 입법화 되어 최근의 입법예고는 이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 하위법인 시행규칙의 보강의 의미를 지닌 것을 안다. 즉 최근의 입법예고는 그 법의 찬성유무를 논하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건강복지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법이며 전문의 제도 자체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양질의 구강보건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 입법견지에서 이루어진 법이란걸 돌이켜 본다.

의사란 환자가 있고나서 의사가 있는 법이며 환자는 국민이란 점에서 다시 한번 전문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학문적 입장 및 隣接醫學問과의 영역문제 등에 있어서 학문적 깊이와 고급의료인 배출과 함께 치과의 올바른 인식과 치료범위를 위해 전문치과의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치과가 단순히 치아치료에 그치지 않고 악안면 영역의 제 질환 및 성형재건 치료를 담당한다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전문의 제도가 아닌가 한다. 우리 구강외과 고유진료영역에 대한 인접학과의 영역 침해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몸으로 우리영역을 지키며 버티어 왔고 구강외과 환자를 시술함에 있어서 전문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유진료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차라리 수모를 견디어 온지도 거의 30년에 이르는 현재에 있어서 다행히 1982년 제 31차 대의원 총회를 거쳐 1985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96.6%라는 호응하에도 그동안 연례행사에 불과했던 본 제도의 입법화에 현 집행부의 충실한 집행 노력으로 입법예고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학회는 그동안의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전문의제도에 찬성을 표하는 바이며 비록 입법예고가 그 시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은 협회장이 하는 것인 만큼 대다수 치과 의사의 여론을 참작하여 실시하되 사소한 실리를 이유로 전문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므로서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비록 본제도의 실시에 앞서 본제도가 본의 아니

게 전체치과 개원가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라 할지 불이익이 초래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도 있고, 이에 따른 개원가 일부의 맹렬한 반대로 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개원가의 부작용을 제거 내지는 최소화함으로써 본제도의 참뜻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마련되어야 되겠고 또 그리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까닭에 이제도는 본제도에 대한 찬·반논란의 와중에서 벗어나 가장 실효성있고 무리없는 시행방안을 찾아 전향적 자세로 우리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찾도록 하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장 金 宗 源

4. 전문치과의제도의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건강한 사회와 올바른 의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작금 치과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치과의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이번 전문치과의제도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의료의 잘못된 전문화는 불필요한 의학교육의 연장을 비롯하여 상업성이 있는 특정분야로의 의료인력의 집중 등 의료의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하여, 의료비의 전반적인 상승과 그로인한 국민부담의 가중만이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악화시키는 문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사업 등 의료의 총체적 발전에 역행하며, 특정분야의 과행적 집중과 함께, 전문과목사이의 부조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잘못된 의료전달체계하에서의 전문의제도의 시행은 올바른 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우리 모두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현재 치과영역의 의료전달체계는 지역별, 단계별 차별성을 두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의료체계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치료내용과 특수한 전문적 내용간의 원활한 연결을 갖는 의료전달체계입니다. 1, 2, 3차 의료기관의 구분도 이러한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문의제도는 1차 진료기관에 있어서 일반의와 전문의를 그대로 병존시킴으로써, 의료인간의 잘못된 대립, 갈등과 함께, 의료인력의 올바른 배치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전문의제도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맥락하에서 1차 진료기관과는 다른 상위체계의 제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전문치과의제도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현재 전문치과의제도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치과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로 세우고 있는 부분은 전문의과정을 통한 치과의사들의 질적 발전과 다양한 연구를 통한 학문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의제도가 일시적인 학습(학문이 아니라) 열기를 갖고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문적 발전을 기대한다면, 전문의제도와 같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과 대학병원의 기능을 지금과 같은 단순진료기관의 위치에서 학문적 탐구를 위한 위치로 올바르게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이와함께, 전문의제도의 시행은 앞서 말했듯이 치과계의 총체적 발전이 아닌 상업적으로 유익한 특정과목에 대한 집중과 기형적 발전만을 초래합니다. 특히 의료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예방의 업무는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고, 상업성에 따르는 특정분야의 치료술식(학문이 아닌)에의 집중만이 초래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4. 일반의(Medical Part)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원래 전문의제도는 일반 G.P.와는 달리 숫적으로 소수를 차지하면서 원활한 의뢰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전체 의사수에 있어서의 전문의의 비율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과정을 밟지 않으면, 개업을 해도 별볼일 없다는 철저한 상업성에 빠져서, 전문의과정은 교육과정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1차 의료기관에 일반 G.P와 전문의가 공존함으로써 대단히 잘못된 의료전달체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의(Medical)의 추세는 오히려 가정의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의 1차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무척이나 많은 시행착오를 오히려 생성하고 있는 일반의의 추세에 비교해 볼 때도 전문치과의 제도의 시행이란 것은 올바른 시대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5. 현단계에서는 전문치과의제도의 시행은 치과계 내부를 엄청난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문의제도의 시행에 대한 찬반여부로 대단히 많은 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근거에서 볼 때 대다수의 개원의들은 제도시행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시행이후 전문치과의와 일반개원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입니다. 특히 전문의과목의 설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보다 첨예하고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도 이러한 반발이 설정되는데, 하물며 시행 이후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겠습니까?

이와함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전문치과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치협 집행부가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민주화의 추세로 볼 때,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일반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시행 저지를 위한 다양한 집단행동들(예를 들면, 서명운동이나 항의문 채택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축적되면 우리 치과계는 엄청난 내분과 대립에 놓일 것이 명확합니다.

6.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전문치과의제도의 시행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현시점에서 전문치과의제도의 시행이 갖는 많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현재로서의 전문치과의제도의 시행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전문치과의제도 그 자체는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살릴 수 있기 위하여는 현실의 의료체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극복되고, 제도시행을 위한 기초가 다져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시급한 일입니다. 그 기초는 의료인력의 올바른 배치를 비롯하여,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이나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등이 보다 먼저 개선되어 나가면서 닦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떠한 제도의 마련에 있어서도, 소수 집단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제도가 준비되어서는 안되며, 의료인이 사회적 소명과 국민 건강권의 확보에 기여한다는 원칙 위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제도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보일 것이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보다 활발히 펼쳐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

합니다.

7. 1월말로 제한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 내에 치과계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현시점에서 전문치과의 시행이 저지되도록 모든 치과의사 여러분이 함께 노력합니다.

치과의사들의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무척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전문치과의제도의 시행은 당연히 반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치과의사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며, 1월말 이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대운동을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보사부 의료제도과로 우리의 의견을 모아 보냅니다.

모든 치과의사들이 자기의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보냅니다.

1990. 1. 19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이문령

5.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

그동안 진료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4월 21일 개최되는 제39차 치협 대의원 총회에 즈음하여 그동안 서울시 전문치과의제도 반대추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대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치협집행부에서 시행을 추진하여 온 전문치과의 제도는 지난 1월 8일 보사부의 입법예고 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전국 대다수 회원들의 시행반대 여론을 취합하여 몇분의 지부장님과 같이 보사부를 방문하여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치협으로하여금 이제도의 시행을 금년도 대치위원총회까지 유보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시도지부장회가 두번 있었고 서울회원들은 직접 서명날인을 하여 서울 개업회원의 약 70%가 반대의사를 표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대다수 회원들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대치집행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중지하지 않고 그 시행여부를 90년 4월 21일 제 39차 정기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니다.(89년도 회무보고 81쪽 참조) 때문에 전문치과의제도에는 대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치과계는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우리들의 진료여건은 더욱 더 열악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여건속에서 전문치과의제도가 시행 되어야겠습니까? 더구나 그 추진과정도 회원들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대의원총회(제 38차 치협총회 89. 4 유성개최)에 보고도 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추진하여 입법예고까지 이르게 된 비 민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전문치과의제도가 한국치과계의 백년 대계를 위한 제도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지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참여속에 우리의 손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냅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대의원 여러분께 감히 제시합니다.

1. 이번 총회에서 치협이 추진한 전문치과의 제도를 반대하여 입법예고 이전상태로 환원시킵시다.
2. 대의원 총회에 전문치과의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를 창출해 냅시다.

대의원 여러분 !

여러분들의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손으로 개척합니다.

1990. 4. 18

전문치과의제도반대 서울시추진위원회
위원장 최 재 경

6. 전문치과의사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며

어느 전문직종이나 그것이 사회적인 비중은 그 전문직종인의 사회적인 기여도에 비례한다 하겠다.

우리치과의사들도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과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1962년 의료법이 공포된 이래 전문치과의사제도의 실시를 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30년래 수임사항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30여년동안 우리협회의 행정부제 내지는 무성으로 말미암아 또한 대의원의 일관성없는 의견속출로 마치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그 애초부터 의도와는 달리 전문치과의사제도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과 정부에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실은 지난 30여년동안 전문치과의사제도를 전제로한 문교보사 및 국방행정으로 우리 치과의사들을 지원해준 정부나 실제 오랜기간 제도적인 보장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며 대학과 수련병원(실제로는 법적보장이 없는)에서 전문치과의사 수련교육에 종사하여온 공직치과의사회 회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허무감을 안겨주었다.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 우려되는 제반문제는 오히려 치과의사 상호간의 불신감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공직에서 수련교육을 담당하고, 실제 수련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모임인 공직치과의사회는 전문수련교육에 못지않게 전인교육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이의 시정과 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그러나 공직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 어느 한 부류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전문의제도를 전제로 법적 보장없이 시행되어져 왔던 여러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수련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따라서 보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함으로 그들의 치과의사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치과의사의 사회적인 기여도를 높이자는데 그 순수한 뜻이 있음을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

실제 보사부에서 지난 연초에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령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치과의사들 뿐 아니라 국민들편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모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 할때 우선은 모법을 인정하고 현모법에 규정된 내용 범위내에서라도 그 시행령에 우리의 의견을 정정당당히 정부와 국민앞에 제시해야만 오히려 모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이 공포되고 일정기간후(이 기간은 치과의사협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전문치과의사 시험을 치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동안 우리의 의견을 의료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제의 우리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이 우리치과의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왜곡되게 이해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우리의 입장은 난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여러치과의사 동료회원들에게 호소한다.

우리들이 이 제도가 조속히 실시되기를 강력히 호소함은 여러 전문치과교육이 이 사회에 필요할진대 그 교육의 정당한 법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하루빨리 수련교육의 정상화를 기해달라는 것이다.

1990. 4. 21

공직치과의사회장 이 종 갑

7. 전문치과의 제도 추진경위

— 목 차 —

I. 서 론

II. 전국 지부장회의 보고

III. 정기대의원 총회보고서 및 사업계획

IV. 전문치과의 제도 년도별 예산 편성현황

V. 전문치과의 제도 치의신보 홍보현황(1982년 도 이후)

I. 서론

우리나라에 전문의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52년 11월 12일 서류심사에 의해서 10명의 의사에게 허가증을 발부한 것이 시초입니다. 치과의 경우에는 1962년 7월 30일에 공포된 의료법에 처음 명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치과의 제도는 여러사정으로 연기되어 오다가 1982년 보사부로부터 시행되지 않는 법률을 폐기하겠다는 통보가 있어(1988년에도 있었음) 그해 4월 10일 대의원총회에 상정, 논의한 끝에 시행에 필요한 조치(예 : 전문의 제도시행 연구위원회 설치 등)를 시행할 것을 조건화하여 가결되었고, 그 이후 역대 집행부가 전문치과의 시험시행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연구와 더불어 공청회(1984. 3. 15)와 설문조사(1984. 12. 15~1985. 1. 15)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추진하여 왔다. 본 집행부도 같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총회에 상정 의결된대로 충실히 수행하였던 바, 1990년 1월 8일자로 보사부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협회는 전문치과의 시험시행위원회를 열어 제6조 4항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부칙조항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를 통과 하였으나, 1990년 2월 10일 전국 지회장회의에서 회원들의 찬반의견이 다양하여, 1990년 4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사회부에 제출키로 합의되어 이를 보건사회부에 연기 요청하였음.

II. 전국 지부장회의 보고

1. 1990년 1월 28일

치과전문의시험시행위원회(10/13, 10/26, 11/30)을 개최하여 마련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전문치과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보건사회부령, 대통령령)을 제9회 정기이사회(89. 1. 11)의결을 거쳐 보건사회부에 건의함.

2. 1989년 6월 24일

전문치과의제도 규정 개정(안) 및 제정(안) 건의(대 : 보건사회부 5/14) : 협회가 건의한 대통령령 및 보건사회부령에 대하여

- (1)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치과의 수련병원 명부(47개기관)
- (2) 수련병원별, 년도별, 전문과목별 이수자 현황(인턴 : 879명, 레지던트 : 1,420명)
- (3) 1989년도 수련병원별 인턴, 레지던트 년차별 현황(인턴 : 192명, 레지던트 : 374명)을 요청받아 동자료를 각수련기관으로부터 접수받아 보고함.

3. 1990년 1월 20일

전문치과의제도 입법예고에 관하여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설명함(슬라이드)

4. 1990년 2월 10일

전문치과의제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을 정기대의원총회(1990년 4월 21일) 이후로 유보키로 함.

III. 정기대의원 총회보고서 및 사업계획

1. 1989년 제38차 정기대의원 총회

1) 보고서

(1) 전문치과의 시험제도 추천

치과전문의시험시행위원회(10/13, 10/26, 11/30)

을 개최하여 마련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전문치과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대통령령 및 보건사회부령)을 제9회 정기이사회(89. 1. 11)의결을 거쳐 보건사회부에 건의함(대 : 보건사회부 89. 1. 21)

(2) 건의에 대한 회신(보건사회부 89. 2. 8)

전문치과의 제도규정(안) 대통령령과 보건사회부령을 건의한데 대하여 학계(치과대학)를 포함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취합된 결과를 요청해 오에 따라, 이미 본 협회에 실시 추진한 사항을 정리하여 재건의 함.

2) 사업계획

* 전문치과의시험 시행추진

(1) 목적 : 전문치과의 시험 실시 결정에 따른 시행추진을 위하여 전문치과의 자격고시위원회 설치를 연구 검토하여 시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

(2) 방법 : 협회가 마련하여 건의한 대통령령 및 보건사회부령을 단독 전문치과의의 규정으로 개, 제정되도록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치과전문의시험 시행위원회, 학술위원회 및 치과대학장 간담회를 통한 전문치과의제도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및 고시위원회 설치에 따른 여론을 수렴, 분석한 다음 전문치과의의 시험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고히 함.

(3) 기간 : 1989년 5월 1일~1990년 4월 30일

2. 1988년 제37차 정기대의원 총회

1) 보고서

*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추진

(1) 경과 : 현재까지 법상 실시근거만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제도의 실시를 추진코자 각 분과학회와 꾸준히 치과전문의 수련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

능한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레지던트 수련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련교과과정 등의 의견을 수합하고, 분과학회장회의 및 치과대학장 간담회를 통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시행 세부사항을 수렴함.

(2) 건의 :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병원지정 및 수련기준에 관한 규정(안)”과 “레지던트 각과별 년차교과과정”을 확정하고 동 규칙의 개정을 건의하였음.(대 : 보건사회부, 88. 3. 10)

2) 사업계획

* 치과전문의 시험추진

(1) 목적 : 제31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치과전문의시험 실시결정에 따른 시험시행추진을 위하여 과목 및 시험시행기준 등을 연구검토하여 전문의시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2) 방법 : 치과전문의시험 시행위원회, 분과학회 및 치과대학장 간담회를 통하여 치과전문의 실시와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수렴, 분석한 결과에 따라 관계법개정 및 규정을 제정하여 치과전문의 시험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기간 : 1988년 5월 1일~1989년 4월 30일

3) 1987년 제36차 정기대의원 총회

1) 보고서

*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추진

(1) 치과전문의시험 시행위원회는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해 토의하고 일차로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으로 제정키로 함.

(2) 해당 학회에 현행 전공의 수련기관 조정 및 수련 교과과정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합

함.

- (3)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의거 각 병원의 수련현황보고를 접수함(별표 #2참조)

2) 사업계획

* 치과전문의 시험추진

- (1) 목적 : 제31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함.
- (2) 방법 : 치과전문의 시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분석하고 관계법 개정 및 규정을 제정하여 치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
- (3) 기간 : 1987년 5월 1일~1988년 4월 30일

4. 1986년 제35차 정기대의원 총회

1) 보고서

*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추진

- (1) 치과전문의시험 시행위원회는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해 토의하고 일차로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으로 제정키로 함.
- (2) 해당 학회에 현행 전공의 수련기관 조정 및 수련교과 과정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합함.
- (3)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의거 각 병원의 수련현황보고를 접수함.(별표 #2참조)

2) 사업계획

* 치과전문의 시험실시 추진

- (1) 목적 : 제3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치과전문의 시험실시 결정에 따라 시험시행추진을 위하여 과목 및 시험시행기준 등을 연구검토하여 전문의 시험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2) 방법 : 전문의 시험시행 연구위원회, 분과학회 및 치과대학 등에 치과전문의 실시와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수렴,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전문의 시험 시행에 만전을 가한다.

- (3) 기간 : 1986년 5월 1일~1987년 4월 30일

5. 1985년 제34차 정기대의원 총회

1) 보고서

* 학술위원회

전문의 제도 실시를 위한 대책비로 적지않은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활동이 전무하며,

2) 사업계획

* 치과전문의 시험실시 추진

- (1) 목적 :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전문의 시험실시 결정에 따른 시험시행추진을 위하여 과목 및 시험시행 기준 등을 연구 검토하여 전문의 시험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2) 방법 : 전문의 시험시행연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근거로 예산 확보, 시한을 두고 연구하기 위하여 개원의, 치과대학, 분과학회, 종합병원, 보건소, 군진 등 근무자를 연령층으로 인원수에 비례조정, 각계를 총망라 30여명으로 치과전문의 시험 연구위원회 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집행부가 개편되더라도 변동없이 존속시켜 외국의 치과전문의 연혁, 현황, 성취여부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여 치과전문의 실시에 따른 제규정 제정, 개정 등 문제사항을 보완하고 워크샷과 설문을 계속하여 시험실시에 만전을 기한다.

- (3) 기간 : 1985년 5월 1일~1986년 4월 30일

6. 1984년 제33차 정기대의원 총회

1) 보고서

* 치과전문의 시험실시추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험시행추진을 위하여 지난 84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개최한 공청회자료에 의거 설문서를 작성 전국 회원에게 송부하여 설문을 받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 하였으며 또한 치과전문의시험시행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전공의의 임용보고)에 의거 각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현황을 보고 받은 바(별표: 3)과 같습니다.

2) 사업계획

*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실시 추진

(1) 목적: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시행추진을 위하여 과목 및 시험시행기준 등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방법: 설문과 공청회에서 파악된 분석결과에 따라 전문의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3) 기간: 1984년 5월 1일~1985년 4월 30일

7. 1983년 제32차 정기대의원 총회

1) 보고서

* 치과전문의 시험시행 준비

전문의의 시험시행 연구위원 및 소위원회의에서 전문의의 시행에 앞서 전문의 시험 실시에 따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공청회를 개최 하자는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계속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연구하고 있음.

2) 사업계획

* 치과전문의 시험실시

(1) 목적: 제31차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전문의

시험실시 결정에 따라 필요한 전문의 제도시행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행에 따른 적용시기, 시행방법 등 연구와 수련기관의 시설기준 등 관련법 개정을 하여 전문의 시험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2) 방법: 외국의 치과전문의제도 및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현실에 알맞는 방법을 수합, 회원들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문의 시험시행을 단행한다.

(3) 기간: 1983년 4월 1일~1984년 3월 31일

8. 1982년 제31차 정기대의원 총회

'82년 4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제3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계획안을 일반의안으로 상정, 김명국 학술부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표결에 붙이기로 하였으나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규칙발언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휴회, 10분후 속회하여 자격시험 시행여부에 대한 찬반표결 결과 제석 56명중 만장일치로 신입집행부에 그 새행에 관한 필요한 조치(예: 전문의 제도 시행연구위원회 설치 등)를 시행할 것을 조건화하여 가결함.

IV. 전문치과의제도 년도별 예산편성 현황

차	총회일시	총 회 장 소	예 산 액	비 고
32	'83. 4. 9	유성관광호텔	3,200,000	대의원총회통과
33	'84. 4. 28	전경련회관	3,060,000	〃
34	'85. 4. 27	창원관광호텔	2,480,000	〃
35	'86. 4. 12	63빌딩	1,800,000	〃
36	'87. 4. 18	광주신양파크호텔	500,000	〃
37	'88. 4. 23	사학연금관리공단	500,000	〃
38	'89. 4. 8	유성관광호텔	2,400,000	〃
계			13,940,000	

V. 전문치과의제도 치의신보 홍보현황(1982년

도 이후)

1982. 3. 10 전문치과의제도 총회의결 거쳐 실시
계획(치협전문과목폐지 불가 회신)
1982. 3. 25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위 설치키로(치협, 대의원총회결의 거쳐 특별기구)
1982. 4. 10 임원개선·전문의 실시 등에 관심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시에)
1982. 4. 25 전문의제도 실시 보사부에 통보
(총회결의 따라 시기 등 신중히 검토
요망)
1982. 5. 10 전문의사자격시험특별위원회 설치
(시기, 방법, 과목 등 연구와 개업, 공
직회원 등 폭넓은 참여)
1982. 7. 10 5개전문과목 삽입(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
1982. 7. 2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
한 규정 개정령
1983. 4. 10 전문의 시험시행연구특별위원회 소위
원회 구성(자격시행위원회 규정 제정
도 검토)
1983. 4. 10 미국치과의사 전문의 33%만 전문의
(전문치과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서울치대 이승우 교수)
1983. 5. 25 5년이상 경력 전문의 대우(근로복지
공사, 산하치과의사에 적용)
1983. 8. 5 “전문의란”이용광고 위법(치협 명랑
한 질서 위해 시정촉구)
1983. 8. 25 전문의시험시행 따른 공청회 개최 검
토(치협 전문치과의시험시행연구위
원회 소위원회 방향설정 위해)
1983. 9. 15 전문의 실시방향 공청회 개최(치협사
상 첫시도 과목, 심사위원 등 주제)
1983. 11. 15 전문치과의제도 실시방향(지상토론
—권영혁, 김광선, 김명기, 김일봉, 이
충국, 양동규, 양재호, 김계중, 김홍석,
최종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

한 규정 제재

1984. 2. 25 “전문의 실시방향” 3월중 공청회 개
최(치협, 학계, 개업가 등 6명 연자 선
정)
1984. 3. 5 전문의 과목, 자격 등 논의(공청회 관
계 발표자 확정)
전공의 및 수료자 현황 파악(15일까
지 보고토록)
1984. 3. 5 전문치과의제도(덴탈미러, 정동균 치
협부회장)
1984. 3. 1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
한 규정 제재
1984. 3. 25 구강외과부터 우선 실시론 대두(공청
회에서 연자, 토의자들 주장, 마찰없
고 전문성 높은 과목, 응시자격 과도
조치 마련을)
1984. 4. 5 우선 수련병원의 표준화가 급선무(전
문의의 역량 사회가 납득해야, 시간요
하나 합법적인 제도 도입 방법이어야
, 공정하고 유익한 업무처리위해 전담
기구필요—연자 기창덕 발표 내용)
적정교육이수 년차로 자격인정(해당
전문분야 5년이상 연구, 종사자에 특
혜를—토의자 변용성)
현법규 개정없이 실시는 불가능(그러
나 과도기적 경과조치가 필요불가결
한 요건. 제도의 정착후 폐기할 교량
역할의 규정 마련해야—토의자 양원
식 교수)
1984. 5. 5 전문의제도 실시 추진 다각 검토(협
회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 과목, 방
법, 제도적 보완 등)
전문의 제도실시에 관한 문제 토의에
많은 시간 보내
1984. 7. 25 “전문의 란”광고게재 위법(치협, 치
과의원 안내란 이용을)
1984. 11. 5 전문의 실시방향 설문조사(공직, 20
일까지 전공의 교육 등 위해)

1984. 11. 25 “전문의 란”광고게재는 위법(치협, 회원간의 진료질서 위해 강력 촉구)
1984. 12. 8 전문의과목, 자격, 기간 등 설문(치협, 24일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
1985. 3. 23 치과전공의 모두 343명(인턴 13명, 레지던트 208명, 5명이상 전공의 수련기관 15개고 공직지부 집계, 9개 치과대학 72% 차지)
1985. 4. 13 전문의 실시 시한 결정을 건의(공직지부 총회)
1985. 6. 22 전공의 교육내용 표준화 시급(교육기관별 능력차 심해 개선 바람직, 공직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 워크샾”)
1986. 2. 22 5년이상 경력자 전문의 수당을(의료직 폐지 따라 치과의사 차등대우 모순 20년 경력 1년 전문의보다 수당 낮아)
1986. 10. 4 치대교육 내실화 위해 전문의 시험제도 운영해야(전문치과의시험시행위원회 차기회의서 시행작업 구체화)
1986. 10. 11 전문의시험실시 대비 관계규정 마련에 착수(전문치과의시험시행위원회)
1986. 11. 22 전공의 수련기간 의견요청(각 분과학회장에게 공문 발송)
1987. 5. 16 전문의 시행준비작업 본격화(수련병원 지정 및 수련기준 규정(안) 마련)
1987. 11. 21 전문의 수련기간 연장(내과 등 13개과 4년으로 조정)
1988. 2. 6 전문의제도 시행 또다시 이견(분과학회장들 결론 못내려)
10개학회 전문의 관련의견 제출(규정안 만들어 보사부에 승인 요청키로)
1988. 2. 13 치과전문의 규정 마련(치협, 전문과목 10개로 선정)
1988. 2. 27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책 논의(수련기관장 연합회)
1988. 3. 5 전문의제도 실시촉구(공직지부, 전담기구 신설 건의키로)
1988. 7. 2 전문의 수련기간 5년으로 연장(내과 등 13개학과)
1988. 8. 27 치과전문의 실시 연구중(유원하 의정국장 밝혀)
1988. 12. 10 전문의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전문치과의 시험시행위원회 통과)
1989. 1. 21 전문치과의 관계 시행규칙 안 마련(수련병원 10개과중 2개과이상 설치해야)
전문치과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전문게재
1989. 5. 20 전문의 과정이수자 2,500명 추정('89년도 수련병원은 47개소)
1989. 9. 2 전문치과의 시험 응시자격 8년이상 확회활동시 응시가능(치협 전문치과의 규정안 보완)
1989. 12. 2 치협, 보사부 관계자와 전문치과의 간담회 가져
1990. 1. 13 전문치과의제도 시행관련 입법예고 내용 게재
전문치과의제도 고시와 관련 법규 및 그동안 추진된 상황 전문게재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입법예고에 즈음하여(특별기고, 이중훈부회장)
전문치과의제도 시행길 터(관련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개과목, 레지던트 3년으로, 개원의 응시자격부여 숙제로)
개정안, 치협의견 대폭반영, 회원의견 수렴후 확정 예정(사설)
1990. 1. 20 독창적 전문의제 개발해야(협회장 신년기자 회견)
문답으로 알아본 전문의제도
전문치과의제 시행반대결의(서치 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의)
(진료질서문란, 치과의원간 위화감 조성 우려)
학문발전, 국민육구부응위해 전문의

제 시행전폭 찬성키로(전국치주과학
교수협의회)
전문치과의제 의견교환(광주시부 확
대임원회의)
전문치과의제도 시행관련 자료 전문
게재

1990. 1. 27 전문치과의제 최종결정 대의원총회시
내려(전적으로 회원들 의견 따르기
로)
개업의 구제조항 신설 합의(전문치과
의시험시행위원)
회원 67.1%가 전문의제 반대(서치 22
개 구회대상 설문조사)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싸고 격론(전국
시도지부장회의)

1990. 2. 3 개원의에 응시자격 부여(5년이상 치
과의료업무 종사자 전문과목 연수교
육 필요하다면 응시가능)
시행규칙 개정안 최종검토(전문치과
의시험시행위원회)
입법예고와 관련 회원여러분께 드리
는 말씀(협회장 안내문)
대부분 지부, 전문의제 반대(공직, 부
산지부, 분과학회는 찬성)

1990. 2. 17 전문치의제 관련 입법확정, 대의원총
회 이후로 보사부에 요청키로 합의
(10일 긴급 지부장회의)

1990. 2. 24 전문치의제 입법예고 관련, 보사, 최
종결정 총회 이후로, 치협건의 수용의
사 밝혀.

전문치과의사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개정(안)

입 법 예 고 (안)	개 정 (안)
제3조 (수련기간의 변경) (1)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 및 예방의학과와 치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 은 3년으로 한다.	제3조 (수련기간의 변경) (1)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와 전문치과의 레지던트 수 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1) - (3) (생략) (4) 영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 과의사의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과에 전 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1) - (3) (생략) (4) 영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치과의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 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과 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그과 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3)

1. 치과인턴수련병원 지정기준(제6조 제4항 관
계)

가. 공통기준

전문과목	전속전 문의수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시 설 및 기 구
필수전문 과목인	각과 1인 이상	(1) 병상수 5인 이상	(1) 치과진료용 유니트 및 의자 5대 이상

(별표 3)

1. 전문치과의 인턴수련병원 지정기준(제6조
제4항 관계)

가. 공통기준

전문과목	전속전 문의수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시 설 및 기 구
	각과 1인 이상	(1) 5병상 이상 (구강안악면)	(1) 치과진료용 유니트 및 의자 5대 이상

구강외과 가 설치 되어야 한다	(2) 연간외래환자 5,000인 이상	(2) 치과방사선실 1) 치과표준방사선기 구 1대 이상 2) 구강악안면방사선 기구 1대 이상 (3) 임상병리검사 (4) 의무기록실 (5) 약국 (6) 강의실 (7) 도서실 (8) 기공실
---------------------------	-------------------------	---

	외과 수련기 관에 한함) (2) 연간외래 5,000인	(2) 치과방사선실 1) 치과표준방사선기 구 1대 이상 2) 구강악안면방사선 기구 1대 이상 (3) 임상병리검사 (4) 의무기록실 (5) 약국 (6) 강의실 (7) 도서실 (8) 치과기공실
--	--	---

나.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시 설 및 기 구
구강외과	수술실, 입원실, 회복실, 골절단기, 전기소작기, 악골 골절수술용 골정복세트, 악교정수술세트, 토순 및 구개파열수술세트, 악관절수술세트
보철과	기공실, 도제실, 기공기재
교정과	교정기공실, 전기납착기, 페시베이터
소아치과	기공실, 신체억제장치, 흡입마취기
치주과	수술실, 초음파치석제거기, 전기용고기, 치주수술기 계, 치주보철기구

나.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시 설 및 기 구
구강악안면 외과	수술실, 입원실, 회복실, 골절단기, 전기소작기, 악 골골절수술용 골정복기구, 악교정수술기구, 토순 및 구개파열수술기구, 악관절수술기구
치과보철과	기공실, 도제실, 평행측정기(Microparallelometer), 진공도재소성로, 소환로, 치과용서베이어(surveyor), 교합기, 유압기, 가압기(oil pressor), 온성기 (curing unit), 모형트리머, 진공혼합기, 기공용테이 블 및 흡진기, 기공용 엔진 2대 이상, 초음파세척기, 분사연마기(sandblaster), 반조절성교합기, 악운동 기록기, 완전조절성 교합기
치과교정과	교정금속기공실, 구강 및 안면촬영사진기, 완전 또는 반자동조정교합기, 교정모형트리머, 두부계측방 사선장치, 교정장치 연마기, 치료전후 모형진열장
소아 치과	기공실, 신체억제장치, 흡입마취기, 치수치료기구, 보존치료기구, 소아교정용기구, 방습기구, 경온성 기(light curing unit), 용접기(welding machine)
치 주 과	수술실, 초음파치석제거기, 전기용고기, 치주수술 기계, 치주보철기구, 위상차현미경, 흡입마취기

2. 치과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 기준(제6조 제4항 관계)

가. 공통기준

진료과	필수전문과목인 구강외과가 설치되어 있고 보철 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중 1개 이상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전속전문의 수	각과 1인 이상의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1) 병상수는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간외래환자 실인원 1,000인 이상
시설 및 기구	1) 치과용유닛 및 의자 5대를 기준으로 하고 1 개과 증설때마다 2대의 유닛 및 의자가 증 설되어야 한다. 2) 치과방사선실(치과표준방사선기구 1대 및 구 강악안면방사선기구 1대 이상 설치) 3) 임상병리검사실, 의무기록실, 약국, 강의실, 도 서실, 기공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기 타	

2. 전문치과의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기준(제6조 제4항 관계)

가. 공통기준

진료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 과, 치주과 중 2개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 다.
전속전문의 수	각과 1인 이상의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1) 5병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간외래환자 실인원 1,000인 이상
시설 및 기구	1) 치과용유닛 및 의자 5대를 기준으로 하고 1 개과 증설때마다 2대의 유닛 및 의자가 증 설되어야 한다. 2) 치과방사선실(치과표준방사선장치 1대 및 구 강악안면방사선장치 1대 이상 설치) 3) 임상검사실, 의무기록실, 약국, 강의실, 도서실 및 치과기공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기 타	

나.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전속전문 의 수	연간환자진료 실 적	시 설 및 기 구
구강외과	1인 이상	1) 퇴원환자(실 인원) 30이상	수술실, 입원실, 회복실, 골절단기, 전기소작기, 악골 골절수술용골정복 셋트, 토순 및 구개파열 수술셋트, 악관절수술셋 트
보철과	1인 이상	외래환자 300 인 이상	기공실, 도제실, 기공기 재
교정과	1인 이상	1) 부정교합진단 40예이상 2) 악교정기술 5예이상	교정기공실, 전기납작 기, 패씨베이비
소아치과	1인 이상	외래환자 1,000 명 이상	가공셋트, 신체억제장 치, 흡입마취기
치주과	1인 이상	1) 외래환자 250 예 이상 2) 외과적치치 350예이상	수술실, 초음파치석제거 기, 전기응고기(소가), 치주수술기계, 치주보철 기구

부 칙

-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치과수련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1989.
12. 30현재 치과전공의를 양성하고 있는

나.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전속전문 의 수	연간환자진료 실 적	시 설 및 기 구
구강악안면	1인 이상	1) 퇴원환자(실 인원) 30이상	수술실, 입원실, 회복실, 골절단기, 전기소작기, 악골 골절수술용골정복 기구, 악교정수술기구, 토순 및 구개파열수술 기구, 악관절기구
치과보철과	1인 이상	외래환자 2,000 인 이상	기공실, 도제실, 평행측 정기(Microparallelome- ter), 진공도제소성로, 소환로, 치과용세베이어 (surveyor), 교합기, 유 압식가압기(oil pres- sor) 온성기(curing unit), 모형트리머, 진공 혼합기, 기공용 테이블 및 흡진기, 기공용 엔진 2대 이상, 초음파세척 기, 분사연마기(sandb- laster), 반조절성 교합 기, 악운동기록기, 완전 조절성 교합기
치과교정과	1인 이상	1) 부정교합진단 및 진료환료 150인 이상 2) 악교정기술 20인 이상	교정금속기공실, 구강 및 안면촬영사진기, 자 동 또는 반자동 조절교 합기, 교정모형트리머 두부계측방사선장치, 교 정장치연마기, 치료전후 모형진열장
소아치과	1인 이상	외래환자 2,000 명 이상	기공실, 신체억제장치, 흡입마취기, 치수치료기 구, 보존치료기구, 소아 교정요기구, 방습기구, 경온성기(light curing unit), 용접기(welding machine)
치주과	1인 이상	1) 외래환자 1,500 인 이상 2) 외과적치치 300인 이상	수술실, 초음파치석제거 기, 전기응고기(소가), 치주수술기계, 치주보철 기구, 위상차현미경, 흡 입마취기

부 칙

-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전문치과의수련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1989. 12. 30현재 전문치과의전공의를 양

치과대학 부속병원 및 종합병원은 이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치과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한 사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3)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1990. 2. 28이전 치과대학부속병원 및 종합병원치과에서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2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4) (치과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 1990. 3. 1 현재 치과인턴 및 레지던트수련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수련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성하고 있는 치과대학 부속병원 및 종합병원은 이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전문치과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3) (전문치과의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 1) 1990. 2. 28이전 치과대학부속병원 및 종합병원치과에서 인턴 1년 및 레지던트 2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전문치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 (전문치과의에 대한 경과조치) 1990. 3. 1현재 전문치과의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 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 3) 5년이상 치과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치과의사회가 실시하는 전공과목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실시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총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받는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전문치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4) 15년이상 치과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치과의사회가 실시하는 전공과목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실시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받은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전문치과의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 5) 상기의 경과조치는 정규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시작한 자가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까지로 한다.

요 약

전문치과의사 제도에 대하여, 실시를 위한 입법예고를 놓고 앞에서 본것 처럼 활자매체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1990년 4월 21일(土) 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제39차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안전토의시간에 상정된 전문치과의사제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지가 녹음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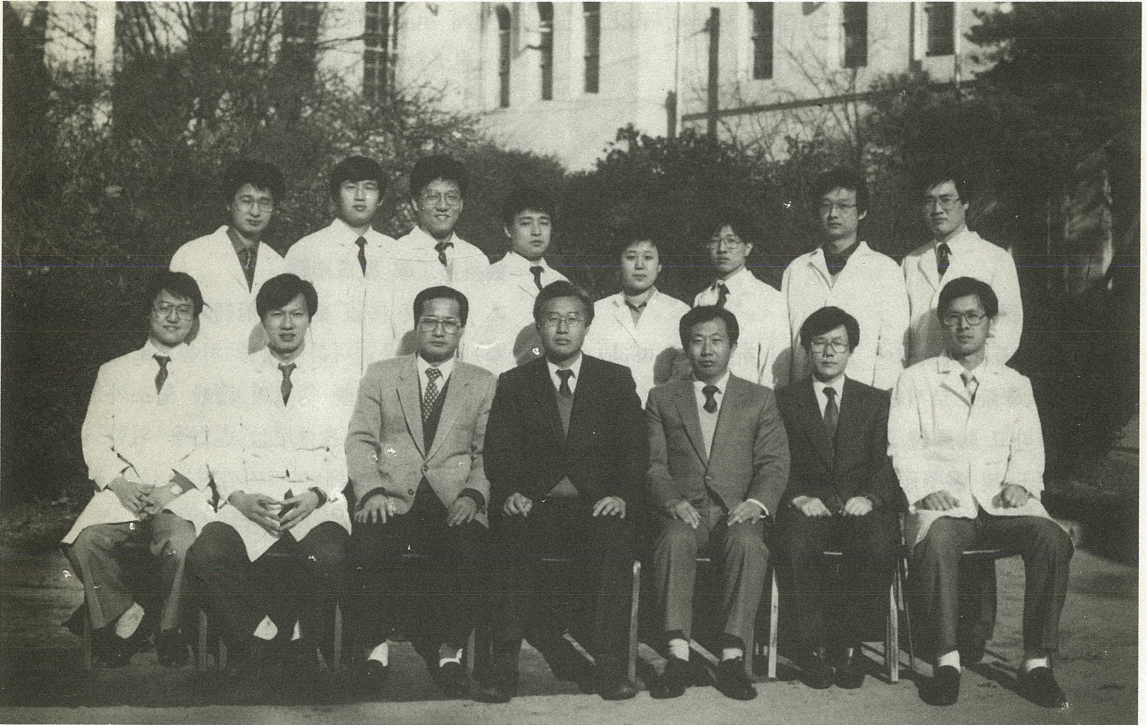
“...입법예고 이전의 현재 상태로 유보키로 의결하고 전문치과의사제도 심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 구성요원은 의장단·각지부장·학계대표·협회임원 등을 구성하기로 의결...”

이 날 대의원총회 전문의에 대한 일반안전에는 서울특별시와 강원도 지부의 「전문제도 반대」, 공직치과의사회의 「전문의 제도 시행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문의 제도에 관한 건」은 모두 유보되었다.

高麗大學校 醫科大學

齒科學教室 略史

徐奎源* 申相完**



이남호 김승일 이만희 류재준 이상은 김희중 조 민 윤동희
현영근 전성근 임재석 서규원 신상완 김성문 김 온

1938년 京城醫學專門學校 개교 당시 齒科學 專任教職은 없었으나 齒科學 講座가 開設됨에 따라 당시의 京城帝國大學 醫學部의 日本人 齒科學教授가 外來講師로 來講하였다.

8.15解放되고 서울 女子醫科大學으로 編制됨에 따라 附屬病院 齒科에 裴珍極 教授(韓國人 齒科醫師로는 醫學博士 第1號)가 第1代齒科科長으로 就任하고 약 3年間 齒科學을 강의하였다.

6.25事變 직전에 裴珍極 教授가 作故한 뒤를 이어 李迥柱 教授가 第2代 齒科科長으로 就任하였으나 動亂中이었으므로 實務을 별로 遂行하지 못하였다. 停戰되고 서울 收復 후 1955년에 韓澤善 教授가 당시 助教授로서 第3代 齒科科長으로 就任하고 附屬病院에 齒科外來를 再開設한 以來 首都醫大(이때부터 男女共學) 友石大學校醫大를 거치면서 高大醫大齒科學 主任教授로 있었으며 1988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주임교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조교수

년부터 第4代主任教授로 徐奎源교수가 就任후 現在에 이르기까지 當 教室이 다음과 같이 運營되고 있다.

齒科學 講義

1955년에 齒科學 講座를 再開하고 醫學科 3學年에서 前後學期를 통하여 週當 1시간씩 齒科學概論과 口腔外科學을 10여년간 강의하였고 그후 學制改編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3學年(1학점) 1학기만을 강의하고 있으며 1學年 조직학 시간에 구강 및 치아의 조직에 대한 강의가 있다.

齒科看護學 강의

1955년 이래 本 醫科大學 附設 高等看護學校 및 醫科大學 看護學科에서 學制 改編될 때까지 10여년간 齒科看護學을 週當 1시간씩 每年 1學期 강의하였다.

大學病院課程

당시의 首都醫科大學에 大學院이 新設됨에 따라 醫科大學大學院으로서 처음으로 齒科學 專攻課程을 설치하고 韓澤善 教授 指導下에 그간 여러명의 醫學博士 및 醫學碩士를 배출하였고 현재 徐奎源교수 및 4명의 교수 지도하에 석사 9명 박사 3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대학원 치과학 전공 개설과목은 아래와 같다.

① 구강악안면외과학(Oraland maxillofacial surgery)

② 구강임프란트학(Oral Implamtology)

③ 구강재건술(Oral Rehabilitation)

④ 악관절 기능이상(TMJ dysfunction)

⑤ 교정학(Orthodontics)

⑥ 교합생리학(Physiology of occlusion.)

研究

현재까지 本教室의 여러 staff과 大學院生들에 의하여 齒科醫學 발전을 위한 많은 學術研究業績을 보였으며, 현재는 Bone Physiology에 관한 연구와 치과 임프란트분야의 기초연구 및 임상응용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病院外來

1955년에 簡易 診療施設로 齒科外來가 재개되고

既往의 助教 制度가 시행되다가 Kim's plan이 시행되면서 附屬病院(現 惠化病院) 齒科에서 醫療院으로 발전되고 醫療院 傘下 惠化病院, 九老病院 및 安山病院에 각각 齒科外來를 두게 되었으며, 1986년부터 齒科醫 修練規定이 改定됨에 따라 惠化病院 및 九老病院에 齒科診療台를 각각 7台씩 설치확장하고 同時에 2개 專門醫 科目(구강외과, 보철과) 修練을 위하여 인턴을 각각 2名씩 모집하고 있어 현재 전공의 12명이 수련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患者數도 매년 增加되고 있다.

또한 惠化病院의 齒科 環境도 1991년 3월 安岩洞 넓은 교내로 惠化洞 醫科大學 campus와 더불어 移轉하게 됨에 따라 齒科學教室의 발전을 期約해 본다.

齒科技工學 教育機關

本 大學校 併設 醫學技術初級大學(現 保健專門大學) 內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齒技工科가 設立되었고 齒科學 教室의 諸般 협조와 齒技工學科 專任教授들의 教育理念 遂行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技工界 指導級 人物들을 養成 배출하고 있다.

第1代學科長 醫學博士 韓澤善 教授

醫學博士 尹昌根 教授

第 2代學科長 醫學博士 吳世潤 教授

第 3代學科長 保健學碩士 金雄哲 副教授

高麗大學校 齒科學 教室

前 職 教職員 名單 :

醫學博士 裴珍極 教授(第1代 科長)

李迴柱 教授(第2代 科長)

金海晚 專任講師

醫學博士 閔丙淳 專任講師

尹應九 專任講師

金國奉 專任講師

齒學博士 劉英世 助教授

醫學博士 韓澤善 教授

齒科學教室 同門名單

金淵柱, 黃弼駿, 閔丙淳, 金駿煥, 朴奎熙, 安秉官,

宋永達, 萬光均, 南淑鉉, 崔在京, 李宗洙, 李 男, 趙裕東, 韓貞憲, 許重一, 尹應求, 全國奉, 鄭泰英, 崔富昞, 鄭平九, 崔浩永, 崔暲烈, 劉英世, 李圭永, 李在明, 李龍宰, 金相千, 李壽久, 蘇宰賢, 金鴻九, 韓泰元, 申相完, 吳世潤, 林茂永, 崔英奎, 李相鎬, 全祥元, 安容淳, 韓承憲, 朴景彬, 辛承連, 朴泰觀, 徐甫英, 趙仁教, 李正烈, 鄭傳根, 裴敏宰, 全成根, 玄英根, 金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현 황
(1990년 4월 현재)

I. 혜화병원(18명)

- 주임교수겸 과장 교수 서규원/조교수 권종진/조교수 신상완(3명)
- 외래교수 이성복/외래교수 조성환/외래교수 조영학/ 외래부교수 이종진/외래부교수 서영수/외래부교수 유근원(6명)
- 전공의 $(2+2+2=6)$ 총6명(6명)
- 기공사 이성욱(1명)
- 간호사 이호순, 간호조무사 윤영희(2명)

II. 구로병원(16명)

- 과장대리 조교수 임재석/전임의사 이동열(2명)
- 외래교수 김지수/외래교수 윤홍열/외래부교수 이희주/외래부교수 황병남/외래부교수 이재봉(5명)
- 전공의 $(2+2+2=6)$ 총 6명(6명)
- 기공사 이두원(1명)
- 간호조무사 이향실, 사환 배정이(2명)

III. 안산병원(3명)

- 과장대리 조교수 김성문(1명)
- 기공사 윤원상(1명)
- 간호조무사 이차남(1명)

IV. 총 인원(37명)

전임교원 $(3+2+1=6)$ (6명)

외래교원 $(6+5=11)$ (11명)

전공의 $(6+6=12)$ (12명)

기공사 $(1+1+1=3)$ (3명)

간호사 $(2+2+1=5)$ (5명)

V. 근황

1988년 : *9월 1일부터 서규원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동 의료원 혜화병원 치과과장 취임.

*8월 31일부터 임재석 조교수 동경 치과대학 구강외과 제2강좌의 1년 장기 연수후 복귀, 9월 1일 의료원 구로병원 치과과장대리 피임.

*9월 1일부터 김성문 연구원(당시 구로병원)이 대우 조교수로 정식 교내 교원에 채용됨.

1989년 : *대우 조교수 신상완(당시 안산병원) 박사학위 취득, 3월 1일부터 조교수 진급

*대우 조교수 김성문 8월 31일부터 치의학박사 학위 취득, 9월 1일부터 조교수로 진급

*조교수 권종진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 구강외과 제1강좌 1년간 장기 연수차 9월 1일부터 도일.

*조교수 신상완 혜화병원 치과로 전보, 조교수 김성문 안산병원 치과과장 대리로 피임(9월 1일부)

*교수 서규원 대한치과임프란트학회 총무이사로 피임

1990년 : *교수 서규원 IADR 한국지부 총무이사로 피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교실 전임의 이동열 3월 1일부터 본교실 전임의사로 채용됨.

*교수 서규원 공직치과의사회 부회

장에 피선

- * 외래교수 윤홍열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으로 4월 21일 피선
- * 외래교수 이성복 강남구 치과의사
회 회장으로 피선
- * 외래부교수 이종진, 뉴욕 부록데일
병원(Prof. Cranin)에서 1년간 예정
으로 근무중
- * 외래부교수 이희주 미국에서 교정

연수중

- * 조교수 권종진 동경의과치과대학
제1구강외과에서 1년간 장기 연수
마치고 8월 31일 귀국 예정
- * 조교수 신상완 장기 연수차 9월 1
일부터 영국런던대학교 유니아티드
의과치과대학 보철과에서 1년간 연
수 예정

전임교원 (6명)

교수 서규원	서울대	졸 (1968)	혜화병원
조교수 권종진	서울대	졸 (1974)	혜화병원

조교수 임재석	서울대	졸 (1976)	구로병원
---------	-----	----------	------

조교수 신상완	서울대	졸 (1977)	혜화병원
---------	-----	----------	------

조교수 김성문	서울대	졸 (1979)	안산병원
---------	-----	----------	------

전임의사 이동열	서울대	졸 (1982)	구로병원
----------	-----	----------	------

외래교수 [11명]

교수 김지수	서울대	졸 (1962)	구로병원
교수 윤홍열	서울대	졸 (1965)	구로병원

교수 이성복	서울대	졸 (1968)	혜화병원
교수 조성환	서울대	졸 (1968)	혜화병원
교수 조영학	서울대	졸 (1969)	혜화병원
부교수 이종진	서울대	졸 (1970)	혜화병원

부교수 이희주	서울대	졸 (1973)	구로병원
---------	-----	----------	------

부교수 서영수	서울대	졸 (1973)	혜화병원
---------	-----	----------	------

부교수 황병남	서울대	졸 (1974)	구로병원
---------	-----	----------	------

부교수 이재봉	서울대	졸 (1977)	구로병원
---------	-----	----------	------

전공의 (12명)

2년차 윤동희	경북대	졸 (1988)	혜화병원
2년차 이남호	경희대	졸 (1988)	혜화병원

2년차 유재준	연세대	졸 (1988)	구로병원
2년차 김희중	경희대	졸 (1988)	구로병원

1년차 김승일	경희대	졸 (1989)	혜화병원
1년차 이만희	서울대	졸 (1989)	혜화병원

1년차 조민	서울대	졸 (1989)	구로병원
1년차 이상은	서울대	졸 (1989)	구로병원

인턴 손성호	서울대	졸 (1990)	혜화병원
인턴 윤동주	경희대	졸 (1990)	혜화병원

인턴 이종인	경희대	졸 (1990)	구로병원
인턴 김정수	연세대	졸 (1990)	구로병원

전임 교원 6명 + 외래교수 11명 + 전공의 12명 = 29명
(1990년 4월 25일 현재)

西域에 關한 醫史學的 基礎調查 第2報

李 漢 水 *

目 次 (承前)

V. 韓國의 高麗時代 齒科醫學과 西域과의 連繫

1. 印度의 醫書 및 本草의 傳來
2. 宋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3. 元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4. 鄉藥으로서 栽培된 西域의 本草
5. 「鄉藥救急方」과 西域의 齒科用 本草
6. 아라비아 齒科醫學과 印度 齒科醫學과의 連繫
7. 아라비아 齒科醫學과 中國 齒科醫學과의 連繫

VI. 韓國의 朝鮮時代 齒科醫學과 西域과의 連繫

1. 明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2. 淸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3. 日本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4. 鄉藥으로서 栽培된 西域의 本草

5. 韓國의 朝鮮時代의 西洋 齒科醫學 暫見

6. 「東醫寶鑑」과 西域과의 醫藥的 連繫

7. 西洋 醫學과의 初期 接觸

VII. 韓國에의 西域齒科醫藥의 傳來 概觀

VIII. 西域出土 醫藥關係 各種資料에 關한 基礎的 知見

IX. 西域醫藥 研究에 必要한 基礎的 文獻

V. 韓國의 高麗時代 齒科醫學과 西域과의 連繫

여기서 고려시대라 함은 918년부터 1391년까지이 약 470년간을 뜻한다. 이 시대는 곧 중국의 경우 오대(五代)로부터 금·송·원을 거친 명의 초기이다. 그리고 세계 치과의사학적 입장에서 이 시기의 치과의학 발달의 중심지를 살펴보면, 아라비아에 이어 그것이 점차 이탈리아 및 프란스로 이천(移遷)되는 시기이며, 서양 치과의학이 전문분과적 색채를 뚜렷이 한 때이다.

고려의 치과의학은 대체로 4개의 경로를 통해서 서약산 본초(약재·의약)를 인식할 수가 있었다.

그 하나는 불교의 흥성과 더불어 있게 된 인도 치과의학과의 접촉이고, 다음은 이미 서역과의 관계가 깊었던 중국 치과 의학을 통한 서역과의 간접적인 접촉이며, 그 다음은 아라비아 상인들

*서울·李漢水齒科醫院

의 왕래를 통한 그것이고, 또 하나는 곧 원(元)을 통한 그것이다.

여기 확실히 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곧 비단길을 통한 서역과 중국과의 교류는 이미 당(唐)의 중기(中期)에는 그것이 많이 쇠퇴한 사실이다. 이 부분의 자세한 치과의사학적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나 아직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비단길을 통한 서역과 중국과의 교역이 수·당대에 전성(全盛)하고 당의 말기부터 불교의 탄압으로 점차 쇠퇴된 사실, 다시 말해서 북위(北魏), 서위(西魏), 수·당(隋唐)을 거치면서 그것이 점차 증대되어 그 전성기인 당대(唐代)에는 서역산 본초(약제)가 대략 30여종 중국으로 전래된 것으로 보는 요온인(廖溫仁)의 견해는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 유의되어야 할만 하다.

1. 印度의 醫書 및 本草의 傳來

고려의 문화는 불교 문화라 할 수 있을 만큼 불교 영향을 받았다. 의학 부문에서도 역시 그 영향은 컸다. 곧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의 국가 운영 같은 점도 그 좋은 예이다.

고종조(高宗朝)의 간행인 「불교대장경」(佛敎大藏經) 목록에서, 중국 송대에 번역되어 고려로 전래된 의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유경(醫諭經) 1권 980년, 송
2. 구료소아병경(敎療小兒病經) 1권 998년, 송
3. 가엽선인설의녀인경(迦葉仙人說醫女人經) 1권 1001, 송
4. 치선병비요법(治禪病秘要法) 2권 ?, 송

그런데 이상 4종의 의서들은 그 내용이 치과의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정종(靖宗), 문종(文宗), 예종(睿宗), 인종(仁宗) 등은 자신들이 와병일 경우 불공으로 그것을 치료했고, 「고려사」 열전 제12에 의하면 일반 민간에서도 인도 의학에 대한 신뢰는 대단했던 점과, 또 당시는 인도 의학이 이미 고려로 다수 전래되어 애용된 점을 추찰케 한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에 최초로 온 때는 1025년(顯宗 16년)이다. 그들은 1026년과 1040년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왔다. 현종 때에는 그들이 1회에 백명씩도 왔다. 「고려사」에 의하면 1040년에 그들이 와서 정종에 바친 것은 수은(水銀), 용치(龍齒), 점성향(占城香), 몰약(沒藥), 대소목(大蘇木)이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아라비아 산출품이 아닌 점은 여기에 용치가 잇는 점만으로도 우선 확실하다. 당시의 용치가 진품(眞品)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담주(淡州), 창주(滄州), 태원(太原) 등지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점성향은 점성, 곧 교지(交趾·交州·캄보디아) 산출인 향료이고, 소목은 인도 동부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소방목(蘇枋木)의 약

칭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더욱 확실하리라 생각된다.

김두중(金斗鍾)은 그의 저서 「한국 의학 발전에 대한 구미 및 서남방 의학의 영향」에서, 고려시대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찰되는 인도계(印度系)의 약품(본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전기한 의서 「구료소아병경」 중에서 소아의 약제로 응용된 것을 대강 추려 본 것이라 하였다. 그가 특별히 “인도계의 약품”이라 한 점은, 이들 약품 중의 향산(香蒜)과 안식향(安息香)은 인도가 아닌 서역 및 중앙아시아 산품이며, 또 백개자(白芥子)는 열대산(熱帶産)의 1종인 까닭으로 그렇게 지적한 것인가 싶다.

황우수(黃牛酥), 향산(香蒜), 사피(蛇皮), 백개자(白芥子), 묘아분(猫兒糞), 수(酥), 안식산(安息酸), 우황(牛黃), 계시(鷄翅), 우각(牛角), 인골(人骨).

이 김두중의 견해 내지 주장에는 물론 다소의 무리와 비약이 있음은 사실이겠으나,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 방면의 연구로서는 그가 효시이기에 여기 인용 부기한다.

치과의학 관계로 상기한 약품(본초)을 살피면, 황우수와 수는 일종의 버터(butter)로 아라비아 치과의학에서는 치통 치료제로 응용되었다.

2. 宋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여기서 송(宋)이라함은 연대적으로 960년부터 1279년까지를 뜻한다.

송과 고려간의 사절의 왕래는 광종(光宗) 때인 962년부터나, 송의 치과의학이 고려로 전래되기는 현종(顯宗) 때인 1016년부터이다.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제6 최승로(崔承老) 열전에 따르면, 989년(成宗 8년) 5월에 최승로가 죽으니, 성종이 유향 200냥, 뇌원다(腦原茶) 200각(角), 대다(大茶) 10근(斤)이 하사된 기록이 있다. 곧 이것이 고려시대 문헌에 나오는 치과의학 관계 최초의 서역산 본초의 기록이다.

유향(Frankin cense)은 감람과에 속한 교목의 줄기로부터 채취된 고체수지(固體樹脂)로 진정작용이 있다. 그 원산지는 홍해(紅海) 연안이다.

유향이 치과 영역의 약제로 사용된 역사는 꽤 오래된다. 고대 이집트와 바비로니아 시대부터 사용되었다. Papyrus of Eber's는 기원전 약 15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함이 정설인데, 이 문서의 내용은 당시로부터 소급되기를 약 2000년이 되는 기원전 약 3700년경 사이에 이집트에서 사용된 여러 처방이 기재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치과 영역에서는 이미 유향이 치통의 진정제와 치경부위 우식증의 치료제 그리고 동요되는 치아를 고정시키는 목적의 약제로서 사용되었음이 이 파피루스에는 기재되었다. 바비로니아의 경우는 이것이 우와(decay cavity) 충청제의

주제(主劑)로도 이용되었다.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것을 치통 진정제의 주제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갈레노스(갈레누스)도 치은염에 계발된 동통의 경우는 유향을 구강내에 무는 것이(吮嗽) 가장 좋다고 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라제스(Rhazes 9세기 중반~10세기 전반)는 유향과 명반을 혼합시켜 아마도 치과의학사 사상(史上) 최초일 우와의 영구충전물로 응용한 일도 유명하다.

유향이 이처럼 일찍부터 치과 영역에서 즐겨 사용되다가 서서히 그 자취를 멀리하게 된 때는 대략 15세기부터이다.

유향이 중국 의서에 수록되기 시작한 때는 아마도 당대(唐代)부터인가 한다. 진장기(陳藏器)의 「본초습유」(本草拾遺 739)에는 “훈륙(薰陸)이 곧 유향이다”하였다. 이어 유향은 송대(宋代)의 구종석(寇宗奭)의 「본초연의」(本草衍義)와 장우석(掌禹錫)의 「가우본초」(嘉祐本草) 그리고 명대(明代)의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각기 그 산지(產地)가 소개되어 있다.

유향이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말 유신(儒臣) 최승로(崔承老)의 사망 당시에 부의품으로 당시의 조정에서 200량이나 하사된 점은, 곧 당시에는 이미 유향이 어떤한 경로로 수입되었었는가 함은 미상이나 상당히 많이 전래되었던 사실을 미루어 알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또한 그 약효나 사용법 등도 일반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려사」에서 본초의 기록을 중심으로 송인(宋人)의 도래(到來) 사항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1020년(현종 11년) : 송의 우선(虞瑄) 등 100여 명이 와서 향약(香藥)을 바치다.

1023년(현종 14년) : 광남인(廣南人) 진문수(陳文遂) 등이 와서 향약을 바치다.

1055년(문종 9년) : 송상(宋商)인 조수(趙受) 등 69명이 와서 서각(犀角), 상아(象牙)를 바치다.

1081년(문종 35년) : 송으로부터 사신을 보내 문종의 병을 돌보게 하며 약재 100품과 별물품 4종을 보내오다.(약재의 품목은 번잡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며 그 중의 서역산 본초만은 후술한다.)

1164년(의종 18년) : 송의 효종(孝宗)의 밀지(密旨)로 서덕영(徐德榮)이 심향(沈香)을 그안에 담은 금은(金銀) 각 2부(二副)를 바치다.

1167년(의종 21년) : 청녕재(淸寧齋)에서 연(宴)을 마련하다. 총환(寵宦) 이영구(李榮鳩)는 이때에 금수(錦繡), 금은화(金銀花), 진향(眞香), 서각(犀角)···(중략)··· 등 기완물(奇玩物)을 모아 그 연회석 좌우에 진열하다.

위의 본초명(의약품명)들 중의 서각(犀角)과 심향(沈香)은 중앙아시아와 남양 각지의 산출

품이나, 향약(香藥)이란 과연 그 종류가 무엇인지 확실치가 않다. 저자는 아마도 서역에서 산출된 진귀한 고가약(高價藥)이라는 뜻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진향(眞香)이라는 말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역시 서역산 진귀약이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

고려와 송의 왕래는 당대(唐代)보다도 송대에 더 많았다. 이때의 무역항은 명조우(明州·寧波)이다. 명조우에는 고려사관(高麗使館)이 있고, 고려의 산출품을 취급하는 전문상점까지도 있었다. 두 나라의 무역은 관(官)과 민(民)으로 나뉘어졌었다. 관은 사절단을 포함한 공적인 무역이고, 민은 민간 상인끼리 호시(互市)를 여는 형식이었다. 두 나라는 962~1164년 사이에 약 30회 공식적인 무역을 한 것으로 되었는데 당시의 왕래자는 1회에 적을 때에는 수십명, 많을 때에는 백명이 넘는 때도 흔했다.

전기한 1079년인 문종(文宗) 33년에 송의 신종(神宗)이 사신을 통해 문종에게 보내온 그 산지명이 명시된 104종의 본초들 중에는 최소 7종의 서역산 본초가 있다. 곧 천축황(天竺黃), 안식향, 심향, 목향, 정향, 몰약, 용뇌(용뇌향)이 그것이다. 이 최소 7종의 본초들 중, 그 산지가 서역이라 명시된 것은 천축황과 안식향 2종일 뿐이며, 나머지 5종은 마치 중국산인 것같이 기재되었으나,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산지명은 곧 당시 광조우(廣州)를 위시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한 항구명(港口名)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대국으로서 자처한 송의 자존심에서 온 결과이라 생각된다.

총 104종의 본초가 송으로부터 왔을 때에는 당연히 당시 약효와 사용법까지도 동시에 전해졌으리라 고찰할 수 있겠다.

전기한 서역산 본초 7종들은 다시 후술되지만, 치과분야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 그 대부분이다.

「고려사」에서 치과의학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목되는 것에 대식국(大食國) 상인에 의한 수은(水銀)의 전래가 있다.

1040년(靖宗 7년)에 보나함(保那盍)에 의해 수은은 소개되고, 그후 1085년(宣宗 2년), 1088년, 1090년 그리고 1094년에 각각 송(宋) 혹은 일본(日本)의 상인들에 의해 고려로 전래되었다.

치과 영역에 있어 수은을 이용한 은합금충전법(銀合金充填法)은 당대(唐代)의 소경(蘇敬) 등에 의해 편찬된 「신수본초」(新修本草·唐本草 659)에 세계 치과의학사 사상(史上) 최초로 기재되는 것인데, 본서는 아마도 고려시대 중기에는 이미 고려로 수입되었으리라 능히 추찰되기에, 비록 아직은 보다 충분한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이것은 주목할 점이다.

일찌기 유럽보다도 앞서 중국에서는 amalgam을 고안하여 은고(銀膏)라 하였다. 그 은고는 은박(銀箔)과 백석(白錫)을 동량의 수은과 함께 혼화 용해시킨 것이다.

수은은 이미 고대 중국인과 힌두인이 사용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천 5백년전인 이집트인의 묘소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mercurous라는 말은 6세기경부터 연금술자(화학자)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국 문헌에서 수은에 관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는 책은 「신농본초경집주」(神農本草經集註, 3권, 梁, 陶弘景)이다. 이 책에 따르면, 고구려인은 단사(丹砂·辰砂·丹)를 환원시켜 수은을 제조할 줄 알았다. 곧 이것은 유화수은(硫化水銀)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수은을 이미 6세기 이전에 조제할 줄 알았다고 추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수은의 제조법은 이집트로부터 그리스를 거쳐 아라비아로 소개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서양의 경우 수은을 이용한 이른바 amalgam의 사용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은 아마도 1818년 프랑스의 화학자 Regnard인가 한다. 일설에 치과 영역에서의 최초의 아말감 사용자는 1805년의 영국의 W. H. Pepys라고도 하지만, 저자는 문헌자료상 Regnard이라 생각한다.

고려의 고종(高宗) 12년인 1225년에 간행된 송(宋)의 조여팔(趙汝括)의 「제번지」(諸蕃志) 권상(卷上) 지국(志國)에는 중세기의 동양 해상무역에서 제일 눈부신 활동을 한 것은 아라비아(阿刺壁人·大食人) 상인으로, 그들은 후일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경쟁자로서 나설 때까지 동양에서의 무역을 수세기간 독점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려사」 권5와 권6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의 왕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25년(현종 16년) : 대식국인 열라자(悅羅慈) 등 백명이 와서 방물을 바치다.

1026년(현종 17년) : 대식인(大食人) 하선(夏洗), 나자(羅慈) 등 백명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치다.

1041년(청종 7년) : 대식국 상인 보나(保那) 등이 와서, 수은, 용치(龍齒), 점성향(占城香), 몰약(沒藥), 대소목(大蘇木) 등을 바쳤기에, 유사(有司)에게 명해 관대우후(館待優厚)케 하며 귀국할 때에는 금백(金帛)을 후사(厚賜)하다.

이상은 아라비아 상인들의 큰 무역선의 내왕 기록이다. 이 기록중의 수은과 몰약 그리고 소목은 곧 서역산이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로 알 수가 있다.

소송(蘇頌)의 「도경본초」(圖經本草)에, 수은 산출지의 하나로 서강계(西羌界)를 들었다. 곧 서역이다.

몰약(沒藥)은 홍해연안이 그 산출지이다. 소목도 인도의 동부이다.

그런데 전기한 「제번지」의 권상(卷上) 지국(志國)에는 대식국(大食國)의 산출품으로 여러 산출품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본초들도 역시 기재되었다.

몰약(沒藥) Myrrh,	목향(木香) Futchucke
유향(乳香) Frankin-Cense,	붕사(硼砂) Borax
안식향(安息香) Benzo-in,	용연(龍涎) Ambergris

서각(犀角) Phinoderose

뿐만 아니라, 진(晉)의 계함(稽含)의 「남방초목상」(南方草木狀) 권3에도 이러한 향약(香藥)은 주로 서방(대식국·페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라 하였고, 김두중(金斗鍾)은 그의 저서 「한국의학사」에 기록하였다.

저자는 상기한 대식국 산출품인 여러 향약들은 이미 고려의 현종(顯宗 1010~1031) 때인 11세기 초반에는 여러 경로로 송을 거쳐 고려에도 전래되었으리라 고찰함이 일단은 옳으리라 생각한다.

동서의 해상교통은 일반적으로 서쪽으로부터 동진(東進)하기가 힘들었다. 해류의 방향과 풍향 또는 태풍의 방향 등으로 서진보다는 동진하기가 보다 힘들었고, 열대지방이라고는 해도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보다 힘겨웠다. 그 교통로는 보통 인도대륙의 서행안을 따라 남하하여 그 남단의 마나르만(Gulf of Manar)을 거쳐 니코바르제도(Nicobar is.)를 경유해서 말레이시아반도 남단을 돌아 인도지나의 남단과 동해안 및 해남도의 남단을 지나, 중국 동남해안에 이르는 코스이다. 그리고 그 왕래는 당시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을 선호함이 그 교통의 난이도(難易度)를 고려한 통례이었다.

3. 원을 통한 西域의 本草 傳來

여기서 원(元)이라 함은 연대적을 1279년부터 1367년까지를 뜻한다. 곧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 후기에 해당된다.

고려는 세계의 동서 양대륙을 정복시킨 원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서역산 의약과 접촉할 수 있었고, 또 원의 국력이 점차 쇠퇴한 그 말기에는 중국대륙의 동해안 장쑤성(江蘇省), 저성(浙江省), 류추(유구·琉球·台灣) 등을 위시한 동남아시아를 거쳐 역시 서역산 의약과 접촉하였다.

원은 서역계의 이슬람교(回回教) 교도인 아라비아인과 페르시아인들을 그 조정에 중용하였다. 그래서 자연히 원은 서역의 의약과 많이 접촉하여 그 영향을 받았기에, 고려도 또한 원을 통해서 서역의 의약을 접촉할 기회가 증대되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원을 통해서 고려로 전래된 서역의 의약으로는 연대순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286년(충렬왕 12년) : 원으로부터 원경(元卿)이 귀국할 때에 원의 세조(世祖)는 포도주를 보내다.

1292년(충렬왕 18년) : 원의 만호(萬戶) 서흥조(徐興祚)가 앵무(鸚鵡)와 공작(孔雀)

각 2핵(兩羽·羽)을 가져오다.

1297년(충렬왕 23년) : 원으로부터 김광취(金光就)가 귀국할 당시 원의 성종(成宗)이 포도주 2기(器)를 보내다.

1298년(충렬왕 24년) : 충렬왕이 공주와 함께 원으로 가니 원의 성종은 포도주를 선물하다.

1299년(충렬왕 25년) : 원에서 포도주를 보내오다.

1301년(충렬왕 27년) : 원에서 향(香) 15근과 필단(匹緞) 30필, 견(絹) 300필, 초(鈔) 864정(錠)으로써 장경(藏經)을 전하게 하다.

1303년(충렬왕 29년) : 원으로부터 포도주를 보내오다.

1304년(충렬왕 30년) : 원으로부터 (중략) 황향(黃香) 15근과 견(絹) 60필 등으로 장경(藏經)을 전하게 하다.

1308년(충렬왕 34년) : 원으로부터 포도주를 보내오다.

이상의 기록을 볼 때에 공작만을 제외한 포도주와 향약은 서역산이다. 이제 여기서 고찰되어야 할 점은, 상기한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두 나라 조정간의 공식적인 의약과 기타 물품의 교환이라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당시에는 이미 일반 민간인이나 상인 혹은 사신들에 의해서는 더 많은 각종 의약품의 전래가 이루어졌으리라 하는 점이다. 물론 거듭 언급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아직은 그 문헌자료가 발견되질 않아 여기 다소의 논리적 비약이 있기는 하다. 금후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포도주는 서양에서 일찍부터 치과 치료제의 하나로 사용된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순수한 백포도주에 방향흥분제(芳香興奮劑)와 기타 약제로 처방된 구강함수제를 “인도의 약”(印度藥)이라 하면서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마시대에도 역시 포도주는 함수제와 치통 치료제의 처방에 들어갔고 골절 치료에도 이용되었다. 아라비아 치과의학에서도 포도주는 발치후의 함수제로서 애용되었다.

아라비아의 외과의사로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학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Abulcasis(1050~1123)는 발치한 후에 포도주, 초, 소금 등으로 함수할 것을 권장했다.

고려후기(1260~1392)의 외국과의 무역은 그 중기와는 달리 주로 원을 통과하는 육로에 의존하였다. 그런데 원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공민왕(恭愍王 1352~1374) 때부터는 해로를 통한 무역이 다시 활발히 되기 시작하여 서역 및 남방의 의약품이 많이 전래되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충렬왕 때에는 1회 그리고 공민왕 때에는 6회의 전래가 있었고, 또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2회가 있다. 이때에 전래된 것들 중에서 고려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은 하약(香藥), 소목(蘇木), 호초(胡椒) 등이다(후술). 그래서 이러한 의약품들은 고려 후기의 의약적 지식을 발달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라비아 의사로서 최초로 이름난 Rhazes(9세기 중반)는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호초(胡椒)와 오배자(五倍子)의 분말로 치아를 마찰시킬 것을 권장했고, 또 치근막염과 그로 인해 야기된 동통에는 역시 호초, 아편, 장미유(薔薇油), 봉밀(蜂蜜) 등을 응용한 진통법을 택했다. 치통이 격심할 때에는 아편을 사용하기도 했다.

호초(胡椒)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치통이나 악골의 골막염 혹은 골수염 때의 함수제의 주제(主劑)로 이용하였고, 로마 치과의학에서는 치수염과 마취제 처방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치과의학의 경우는 치수염과 치근막염과 악골 골막염 및 골수염 치료제의 처방에 들어갔다.

오배자(五倍子)는 로마 치과의학에서 이미 치통의 치료제 처방에 애용되었던 것이고, 또 이것이 와동의 충전제 조제 처방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장미유(薔薇油)는 로마 치과의학에서 구강연조직의 궤양 치료제로서 이용되었다.

봉밀은 히포크라테스가 구강청소와 치은과 치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마찰제(摩擦劑)로 썼다. 이어 로마 치과의학에서는 치아표백제 처방에 들어가기도 했고 치마분의 조제에도 들어갔으며 치통과 치근막염 치료에도 이용되었다.

포도주의 역사는 알코올의 역사보다 좀더 앞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알코올의 중국에서의 역사는 「주례」(周禮)에 따르면, 약 4150년 전인 하(夏)의 의적(儀狄)이 발명한 것으로 되었고 이것이 거의 정설이나, 포도주는 이보다 앞서 중동지역 고원(高原)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도 통설이다. 장건(張騫)(?~기원전 11)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포도주를 가져온 때는 한대(漢代)이다.

고려 후기의 의약품의 교역 상대지역은, 남방은 주로 인도의 동남해안에 위치한 마팔국(馬八國)을 위시하여, 인도지나 중부에 위치한 부남(扶南·캄보디아)과 중국이 동남 해안 일대 및 유구국(琉球國) 등이다. 또 당시에 아라비아라 하는 말은 물론 아라비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지방 일대를 포함시킨 말이다.

포도주가 장미수(薔薇水), 사리별(舍利別·시럽), 증류수와 함께 의약품으로 사용된 것은 아라비아 의학의 전성기(9~11세기)때부터라고 하지만, 저자의 자료에 따르면, 히포크라테스는 부인병으로서 구취가 있고 치은이 암색(暗色)을 띠우면서 건강하지 않을 적의 함수제로 사용했다. 그리고 전기한 고려 후기에 전래된 호초도 역시 그는 치통 치료제의 주제(主劑)로 이미 사용했다.

알코올이 고려 후기에 아라비아로부터 전래되었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범행준(范行準)은 알코올이란 그 어원이 arag로서 이것은 아라비아의 말이고, 이것을 한역(漢譯)한 것이 阿里乞 또는 阿刺吉이라 하였다. 또 김두중(金斗鍾)은, 알코올의 증류법은 그 어원과 함께 증류용 기구까지도 원을 통해 고려 후기에 전래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김두중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몇 문헌과 우리 나라 말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서 알코올의 증류법은 「고려사」에 따르면 공민왕 때에 경상도의 원수인 김진(金鎭)이 명기(名妓)들과 자기 부하들을 모아 소주를 들기 좋아하여 소주도(燒酒徒)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 당시는 이미 그것이 항간에 많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언급하기를, 알코올의 증류법은 원에서 발명했다는 설과, 아라비아의 의사 Avicenna(Ebn Sina ? ~1037)라는 설이 있다고 그의 「한국의학사」에서 논술하였다.

고려는 그 말기에 해외와의 교역을 주로 원을 경유하는 육로로 했다. 그러나 원의 국력이 쇠퇴하자 다시 해로를 통한 교역도 하게 되었다.

이제 전술한 충렬왕, 공민왕 그리고 공양왕 때의 의약품 및 물품의 전래를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보면 다음과 같다.

1298년(충렬왕 24년) : 마팔아국(馬八兒國 Mobar)의 왕자 패합리(李哈里)가 사신을 시켜 (중략)…… 심향(沈香)을 보내오다.

1358년(공민왕 7년) : 원의 저장성(浙江省)의 장사성(張士誠)이 심향을 보내오다.(이하 생략)

1360년(공민왕 9년) : 원의 저장성의 이우승(李右丞)이 장국진(張國珍)을 보내어 심향과 필단(匹緞) 등을 전해오다.

1361년(공민왕 10년) : 역시 중국의 저장성의 장사성과 왕성(王晟)이 각기 심향과 채단(綵緞), 그리고 심향과 채백(綵帛)을 보내오다.

1362년(공민왕 11년) : 저장성의 장사성이 사신을 보내어 다시 심향, 옥향합, 양로(香爐) 등을 보내오다.

1364년(공민왕 13년) : 원의 명조우(明州)의 사도(司徒)인 방국진(方國珍)이 사신을 시켜 심향을 보내오다.

1389년(공양왕 원년) : 유구국(琉球國・台灣)의 중산왕찰도(中山王察度)가 외구(倭寇)에게 납치되었던 고려인을 데리고 유향 300근, 소목(蘇木) 600근, 호초 300근을 선물하다.

1390년(공양왕 2년) : 삼라곡국(暹羅斛國)에서 내공(奈工) 등 8명을 보내면서 그곳의 토물(土物)을 선물하다.

이상이 그 자료인데, 그런데 당시의 조정의 기록이 아닌 것으로서 또 하나 귀중한 자료를 최남선(崔南善)의 「고사통」을 통해보면, 이미 사탕(砂糖)은 12~13세기초에는 고려로 수입되었던 점을 알 수가 있다.

최남선은 13세기 전반에 사망한 이인노(李仁老 1152~1220)의 「파한집」(破閑集)에서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의 제자인 조소(曹素)가 사탕을 좋아해서 그 집에는 사탕으로 담을 쌓고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벌써 당시에는 국제적 조정간의 공식 문물의 교류만이 아닌, 일반 민간인을 통한 해외와의 교역이 꽤 활발했었음을 알 수가 있을 뿐더러, 저자가 특히 여기 지적코자 함은 상기한 「고려사」에서의 자료는 비록 그 내용이 물론 서역산품의 직접 전래 내지 교역은 결코 아니나, 그러나 그 품목중에는 일부의 서역산 의약품이 중국 동남해안이나 유구 혹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중계(中繼)된 것이 혹시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물론 심중한 연구가 더욱 있어야만 될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저자가 일단 지적코자 하는 그러한 의약은 흔히 열대산(熱帶産)이라 알려진 심향과 소목 등이다.

심향과 소목은 향약재(香藥材)로서 일반적으로는 열대산이라 알려졌는데, 심향은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산출되고, 소목은 소방(蘇枋·蘇芳·蘇方)이라고도 불리우며, 동남아시아 각지만이 아니라 넓은 뜻의 서역에 속하는 인도대륙과 스리랑카에서도 산출됨을 지적해 둔다.

4. 鄉藥으로서 栽培된 西域의 本草

현재까지도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으며, 저자로서는 아마도 13세기 후반경에 간행되었으리라 추정하는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 권말의 부록인 「방중향약목초부」에는 본초(鄉藥) 180종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그중에는 몇몇 서역산 본초가 있다. 곧 서역산인 그것이 고려에서 당시에 이미 재배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3종이다.

호도(胡桃·唐楸子·楸子):味甘 平 無毒 有房 熟時採實.

호마(胡麻·荏子):味甘 無毒 如油磨角 小者良.

회향자(茴香子·茴香草):味辛 平 無毒 八九月採實 陰乾.

호도의 원산지는 티베트이다.

호마의 원산지는 대宛국(大宛國 Fergana)이다.

회향자는 송(宋)의 소송(蘇頌)의 「도경본초」에 따르면, 의약으로 이용되는 그것은 수입품이라 하였다. 「송사식화지」(宋史食貨志)와 송(宋)의 송수(宋綬) 등이 칙명으로 편찬한 「송회요」(宋會要)에서 보면, 회향자의 원산지는 아라비아이다. 일설로는 이것이 곧 방풍(防風)이라고도 하나 확실치 않다.

향약에 관해서 처음으로 국가적 관심을 보이며 그 전국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칙명으로 「향

약채취월령)」(鄉藥採取月令)을 간행시킨 것은 세종(世宗)으로서 그의 13년인 1431년인데,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에서 이미 서역산 본초의 재배가 엿보임은 매우 주목할 점이다.

5. 「鄉藥救急方」과 西域의 齒科用 本草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 최고(最古)의 의서 「향약구급방」 중의 치과 관계 기록에 서역산 본초가 있는 보고는 전혀 없었는데, 저자가 조사한 결과 그것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 서역산 본초의 기록은, 본서의 하권(下卷) 1항 및 2항의 부인·소아 잡방(雜方)에 있다. 치초(齒齠)에는 호도를 잘게 해서 바른다는 기록이 있다. 치초라함은 치아가 다쳤을(齒傷) 때이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胡桃肉細 解之

저자는 아마도 이것이 한국의 경우 그 문헌 기록에 나오는 서역산 본초에 관한 치과 관계의 최초의 것인가 한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지적해 두고자 함은, 본서의 여러 치과 관계 기록 중에는 아라비아나 인도의 치과 임상용 약제와 동일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선 2종으로서 사탈피(蛇脫皮)와 청밀(淸蜜)이다. 본서에서 사탈피는 중설(重舌·ranula)의 치료제 처방의 하나로 들어갔고, 청밀은 설생창란(舌生瘡爛·舌炎)과 구설(口舌)이 건조되었을 때의 그 치료제 처방의 하나로 역시 들어갔는데, 이 점은 아마도 서역과 유사한 치료법이 아닐까 한다. 금후의 연구가 요망되는 점이다.

저자의 조사로서 사탈피는 로마시대의 Archigenes(1세기~2세기초)가 치아우식증의 치료제 처방에 넣은 기록이 있다.

「향약구급방」의 상기한 원문들은 다음과 같다.

蛇脫皮燒研令細 以小許 傳之効

그리고 설생창란의 경우의 처방의 원문은 이러하다.

甘草如指 大三寸麋鹿 淸蜜蜜三合 猪脂三合 合煎如棗大(含嚥) 稍口頻用神効

구설(口舌)이 건조될 때의 2가지 처방은 각기 다음과 같다.

麥門冬汁三合 蜜三合 棗肉三十枚 右件藥相和 內甕瓶中於飯 甑上蒸一炊久取出 每服一茶匙含
嚥津

石膏末五合 蜜二升 以水三升 煮石膏取二升 納蜜更煎合 如棗核大 咽分盡更含之

저자는 이상의 사실을 새로 보고하면서 금후의 계속적인 연구조사가 더 필요함을 거듭 확실히 한다.

6. 아라비아 齒科醫學과 印度 齒科醫學과의 連繫

서역의 치과 의약 관계의 한국 전래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아라비아와 인도 치과의학의 상호 연계성을 밝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갖가지 어려움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 큰 이유로서는 관계 문헌 자료의 부족은 물론 언어의 장벽과 그들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 등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중세기의 인도 치과의학은 이미 그 고대에 크게 발달되었던 찬란한 양상을 잃고 있었으나, 아라비아의 Mahomet(570?~632)이 Medina를 새 포교 중심지로 삼은 이후부터 점차 그 인접지를 정복함에 따라 마침내 동쪽으로는 그 국경을 인도와 접하게 되어, 일찍부터 발달되었던 치과의학의 전통을 지니는 인도와의 깊은 교류가 많았을 점은 쉬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치과의학에서는 해부학이 실제로 연구되는 경우가 적었다. 그들은 Aristoteles나 Galenos의 그것을 그대로 준봉하며 생명현상을 목적론에 결부시켜 질병관을 세우는 일이 보통이었기에, 당시까지의 구설(舊說)로써 설명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견해를 다소 달리 하는 인도의 해부학 설명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라비아 최고의 의사로 알려진 Avicenna(979~1037)의 *Canon medicinae*(醫學典範)는 5권으로서, 중세 치과의학에선 큰 권위를 지니며 그후 수세기에 걸쳐 하나의 성전(聖典)으로서 군림한 의서인데, 여기 기재된 총 760종의 약물중에는 많은 인도산이 포함되었다.

한편 아라비아의 대표적 명의(名醫) Abulkasim(?~1013)의 *al-Tasrif*(醫學全書)의 외과적 소작술(燒灼術)이나 안과수술에서도 인도 의학의 영향은 크게 인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아라비아 연금술(鍊金術·Alchimie)이 점성술과 결합하여 크게 발달되면서 그것이 완성된 형태로 10세기말 유럽으로 전해질 수 있었음도,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로 사탕과 초석(硝石) 등이 교역된 까닭이라 생각되고 있다.

이제 치과의학 임상을 중심으로 아라비아와 인도와의 상호 유사점을 보면, 치통치료법에서 서로가 소작법(燒灼法)과 사혈법(瀉血法) 그리고 자락법(刺絡法)을 응용한 점과, 또 내복약으로 하제(下劑·泄瀉劑)를 즐겨 사용한 점을 저자는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은 및 치근질환의 경우 서로가 즐겨 사혈법과 난자법(亂刺法)을 응용한 사실이나, 치석제거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한 점들을 들 수가 있다. 인도 치과의학의 경우, 상기한 여러 치료법은 고대 인도의 명의로서 유명한 Susruta(기원전 6~7세기, 일설로는 기원전후)가 일찌기 응용한 방법이다.

상기한 치과 임상에서의 치료법들은 Rhazes(850~932?)의 *Continens*(醫學府庫), Ali Abbas(?~994)의 *al-Maliki*(王者의 書), Abulkasim(?~1013)의 *al-Tasrif*(醫學全書) 그리고 Avicenna의 *Canon medicinae* 등등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인도의 경우는 Susruta의 *Susruta Samhita*에서 그리고 Charaka(기원 2세기)의 *Charaka Samhita*와 Manu의 법전(法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음을 저자는 조사하였다.

7. 아라비아 齒科醫學과 中國 齒科醫學과의 連繫

아라비아 치과의학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희랍과 로마의 그것들을 수입 융화시키며 다시 그것을 더욱 발달시켜 후세로 전한 서양 치과의학의 근간이다.

아라비아와 중국과의 문화적 접촉은 이미 기원전인 수천 년전부터이리라 능히 추찰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상 그 직접적인 교류가 있던 때는 8세기 초기인 당(唐)의 현종(玄宗 712~755) 때부터이다. 그리고 그 교류가 보다 많아진 때는 11세기부터이며, 더욱 현저히 된 때는 12세기 이후이다.

아라비아의 대표적 명의(名醫) Avicenna(979~1037)의 본명은 Abu Ali Al-Husain ben Abdaalah Ibu Sina라는 긴 이름이다. "Ibu Sina"라는 말은 중국의 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곧 Ibu Sinna가 Avicenna라는 견해이다.

그의 *Canon medicinae*(醫學典範)는 곧 희랍과 로마 의학의 종합적인 내용이다. 본서에는 총 760종이나 될 약물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의 그것도 다수 포함되었다.

Avicenna의 발명으로 그것이 중국 의학에 그대로 수입된 것도 있다. 곧 그의 제제법(製劑法)이다. 향약(香藥)을 주제로 삼는 환약(丸藥)에는 금은박환의법(金銀箔丸衣法)을 써서 향약류의 휘발성(揮發性)을 방지한 새 방법이다.

Avicenna의 이러한 발명은 그후 곧 중국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후 이러한 방법을 응용 내지 변형시켜 한국에서는 아마도 향약류의 환약에 주사(朱砂)나 단사(丹砂)를 그 외의(外衣)에 입히게 된 것이 아닐까 일단은 추찰되기도 한다.

송(宋)의 송수(宋綬) 등이 편찬한 「송회요」(宋會要)에는 중국산 본초(本草·藥材)가 아라비아 상인들과 거래된 것으로서 약 45종 정도가 기재되었다.

그리고 「송회요」와 「송사식화지」(宋史食貨志)에는 아라비아로부터 중국으로 수입된 본초가 약 22종 정도 기재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볼 때에는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의약적 교류가 송대(宋代)에는 있었던 점을 알 수도 있겠거니와, 또한 그 결과는 그러한 본초가 다시 중국으로부터 고려로도 다수 수입되었을 점을 능히 생각할 수 있다.

치과의학 임상면에서 약자간의 유사점을 조사하면, 치은과 치근 그리고 악골의 질환일 경우에 난자법(亂刺法)을 즐겨 응용한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더우기 치과용 약재로서 아비산을 사용한 점도 동일함을 저자는 지적한다.

이러한 점들은 중국의 경우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100卷, 宋, 王懷隱 等, 992), 「태평혜민 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 5卷, 宋, 陳師文, 1106), 「성제총록」(聖濟總錄, 200卷, 宋, 曹考忠 等, 1111~?)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됨)

歴史를 논하는데 北韓의 것과 中國의 것을 接하기가 지극히 어려웠다. 따라서 제3국이나 外誌를 통하는 방법만이 있었을 뿐이다. 나라의 分析과 思想 및 理念의 차이 때문에 中國과의 交流는 北韓과 마찬가지로 막혀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時流는 中國의 往來가 가능해졌다. 이에 本學會에서는 中國의 北京과 延邊을 訪問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였다.

여기에, 중국방문 회원 모집과 초청장을 소개한다.

□ 편집자주 □

◇전국 치과의사에게 보낸 안내 공문

직인생략

수신: 회 원

제목: 중국여행안내

1. 회원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치과의사학회에서는 오는 6월 20일부터 13일간 중국 북경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치과위생관계자와 치과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며(가능하면 연변 조선족의 치과 무료 진료) 백두산 천지의 등산을 위하여 중국여행단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회원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모집안내 1부

2. 일정표 및 신청서 1부

3. 백두산(천지)안내서 1부

1990년 4월 1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이병태

※ 중국 치과계 단편소식

북경 의과대학내에 구강의학원이 있음(7년제이며 졸업하면 석사학위 줌)

구강의원-우리나라 치과병원

아과진료소-우리나라 치과의원

각 성마다 자치주마다 교육 및 의료제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함

중국여행단 모집안내

1. 목 적

중국 치과 관계자와 양국의 치의학계 현황과

역사에 대하여 상호 논의하며 연변조선족의 치과 무료진료를 통한 민족애의 발휘와 민족 영산인 백두산을 등정하고자 함.

2. 여행지역

북경, 심양, 연변(연길), 백두산(천지), 도문, 용정, 홍콩

3. 여행기간

1990년 6월 20일~7월 2일(13일간)

4. 여행일정

별첨 세부일정표 첨부

5. 참가인원

20명(선착순, 치과의사에 한함)

6. 소요경비 249만원(왕복항공료, 수속비, 여행비, 숙식비, 보험료 포함)

7. 신 청 :

가. 신청마감: 4월 30일

나. 신청방법: 신청금 30만원과 신청서를 학회나 수속여행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실분은 국민은행 009-01-1152-361 김은정 앞)

8. 접수 및 문의처

가. 대한치과의사학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현대빌딩(이병태 치과의원) (736-0445, 737-2691)

회 장 이 병 태

나. (주)은마여행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5-2(739-0371~9)

담당: 김환곤, 김은정

치 과 의 사 중 국 일 정 표

일 자	출 발/도 착	일 정
제 1일	서울/홍콩	서울 출발, 홍콩 도착 홍콩섬, 구룡반도관광
2일	홍콩/북경	천안문광장, 북경시내관광
3일	북 경	만리장성, 이화원관광
4일	북 경	북경의과대학 구강의학원방문, 자금성관광, 명13능방문
5일	북경/심양	심양시내관광(고궁, 동능)
6일	심양/연변	연길시청방문, 조선족 구강위생 및 치과계현황 청취
7일	연 변	연변대학교 방문, 연변문화예술원 특별공연관람
8일	연 변	연변조선족치과진료 연변치과의사들과 구강보건실태조사 및 공동학술간담회
9일	연변/백두산	도문, 용정, 두만강유역 역사유적답사
10일	백두산	백두산등정, 천지
11일	백두산/연변	조선족 안도현마을방문(치과 및 구강보건실태조사)
12일	연변/북경	북경대학교 치과종합병원 방문
13일	북경/홍콩/서울	북경출발, 홍콩경유, 서울도착

중 국 여 행 신 청 서

성 명		신 청 일	월	일
현 주 소		자 택 전 화		
치 과 의 원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병 원 주 소		병 원 전 화		
여 권 유 무	유 · 무	중 국 여 행 유 무	유 · 무	

※ 필요하신 서류는 접수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백두산 천지 안내

1.백두산 천지는 산악지대로서 해발 2,733미터의 고지이므로 기후가 변화무상합니다. 따라서, 만약 폭우가 쏟아지거나 짙은 안개가 끼거나 강풍이 불 경우 안전관계상 현지 안내인의 판단에 의하여 천지등정이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천지에서 떨어지는 비룡폭포와 옆의 노천온천에서 일정을 진행하겠아오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가 백두산 천지등반이 가능한 기간이며, 많은 중국 사람들도 이 기간에 천지등반을

합니다)

- 비룡폭포 : 백두산 천지에서 직접 떨어지는 높이 100미터의 폭포수량이 많고 송화강의 원류를 이룬.
- 온 천 : 비룡폭포 바로 옆에서 솟아오르는 유황온천, 노천에서 약 300미터 흘러서 식힌 다음 온천장으로 넣음 온천욕도 가능함.
- 백두산 고원 스키기지 : 온천부근에 백두산 고원 스키기지가 있고 생활시설이 잘 되어 있음.

2.백두산 등반 전일 숙박하는 안도현 2도 마을은 조선족 마을로서 상당히 큰마을 입니다. 관광지

로서 개발되었으며, 백두산 등반의 전진기지입니다. 도착후 영빈관에 투숙하여 백두산 산채나물을 곁들여 조선족 식사를 즐깁니다. 이후 백두산 아래 첫 마을 이도에서 만주의 여름밤을 휴식으로 보냅니다.

3.도문은 만주와 함경도의 국경도시로 두만강에 접해있습니다. 노래 “눈물젖은 두만강”의 배경이 된 도시로 현재 북한과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술 집담회 개최

5월 28일(月)－임원 임기 3年으로

한신치과의원 회의실

5월 2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20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辛在義(본회 부회장)의 “치과의학의傳來”, 金明(하얼빈 조선족의원 원장)의 “중국동북부지방(흑룡강성)의 치과계와 일반교육의 현황”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병태(本會 회장)의 국산 다이아몬드 포인트(바)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協會會長 임기가 3年으로 됨에 따라 本會會長 및 임원의 임기도 3年으로 하기로 하여, 앞으로 본래의 2년 임기보다 1년을 연장시키기로 의결했다.

奇昌德 R.F.A. 한국회 회장

본지 발행 찬조비 10만원

기창덕(서울 기창덕 치과의원장)씨는 본지에 특별기고를 하면서 1990년 6월 30일 오전 이병태 회장에게 학회지 발행에 사용하라고 일금 10만원을 전달했다.

本會 中國齒科學術交流團

6월 20일 向中國

大韓齒科醫師協會 傘下의 分科學會가 公式으로 中國의 치과계와 中醫 그리고 朝鮮族 자치구 치과 담당자들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20일 김포국제공항에서 KE 617기편으로 李丙台 회장과 백홍우(청주)·민병성(부산)·구기서(서울)·전승오(부산)·노중준(부산)·유지은(인천)·김기현(마산)·최동율(서울)·오병식(서울) 등 10명의 일행이 떠났다. 이들은 우선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 입국 비자를 받은 다음 北京으로 간다. 그리고 7월 2일 귀국예정이다.

입회 안내

입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02) 736-0445, 737-2691

110-050 서울·종로·세종로 178

현대 BLD 이병태치과의원

김성남 (02) 593-0028

137-043 서울·서초·반포 409-1

한신치과의원

지구조가 포함됨.

convenience o. (convenience jaw relation, convenience relationship of teeth), 편의교합(便宜咬合). 중심위로 폐구할 때 교합간섭이 있어도 최대한으로 많이 접촉하는 상태로, 중립교합에 대하여 전방위·측방위·전측방위·동·수평성될 수 있음.

coronary o. 관상동맥혈전증(冠狀動脈血栓症), 관상동맥폐쇄.

customized o. 맞춤교합. 매식학에서 사용하는 교합.

distal o. 원심교합(遠心咬合), 후교합(後咬合). 교합선의 후측에 있어서의 교합. Angle에 의한 것.

eccentric o. 비중심교합(非中心咬合). 중심교합이 아닌 교합.

eccentric o. 선천성비중심교합(先天性非中心咬合). 아랫면접합면 접촉(斜面咬合面接觸)에 의한 고유감각기전(固有感覺機轉 proprioceptive mechanism) 때문에 오는 비중심교합.

edge-to-edge o. 절단교합(切斷咬合). 중심교합 상태에 있을 때 전치가 절단끼리 접촉하는 교합.

end-to-end o. ▼ ⇒ occlusion, edge-to-edge

functional o. 기능교합(機能咬合). 치아가 기능을 발휘하는 동안 어떤 기능적인 범위안에서 대합치와 접촉되는 교합형태로, 외상(外傷)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의 교합.

gliding o. 활주교합(滑走咬合). 치아가 운동중에 접촉하는 교합.

group function o. 군기능교합(群機能咬合).

hyperfunctional o. 과기능교합(過機能咬合).

ideal o. 이상교합(理想咬合). 치아가 저작·발음·심미 등 모든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고 가상하는 교합형태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다는 교합을 논하고 토론할 때 기준이나 표준을 삼는 교합. ⇒ occlusion, normal

infra-o. 단소교합(短小咬合).

key to o. 제 1대구치(第一大臼齒).

labial o. 순측교합(脣側咬合). 교합선의 전방, 즉 입술쪽에 있어서의 교합. Angle에 의한.

lateral o. 측방교합(側方咬合). 하악골이 측방운동을 했을 때, 상하악의 대합치끼리 교합하는 것으로, 작업측에서는 협측교두끼리 교합하며 균형측에서는 하악대구치 협측교두와 상악대구치 설측 교두끼리 접촉함.

lingual o. 설측교합(舌側咬合). 교합선의 내측, 즉 설측에 있어서의 교합. Angle에 의한.

malfunctional o. 기능부전교합(機能不全咬合). 결손치(缺損齒), 경사지거나 엮전(捻轉)된 치아와 같은 요소로 인하여 정상적이거나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합.

mesial o. 근심교합(近心咬合).

neutral o. 중성교합(中性咬合). ⇒ occlusion, normal

normal o. 정상교합(正常咬合). 일치 또는 대합치와의 관계가 아무런 이상이나 장애 없고 습관적인 위치에 있을 때의 교합.

physiologic o. 생리학적교합(生理的正常咬合). 두개골·치아·상악관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발육하여 성장한 상태에서 조합되었을 때, 대합치간의 교두(咬頭)형상면들이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로, 교합이 조화를 이루고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조직과 구조에 있어 염증이나 기타 이상이 없는 교합.

pathologic o. 병적교합(病的咬合). 지지조직(支持組織)이나 악관절(顎關節)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교합관계를 가리키는 교합.

physiologic o. 생리학적교합(生理的咬合). 저작기계통(咀嚼器系統)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치아지지조직에 병변을 일으키지 않는 교합.

p. normal occlusion ⇒ occlusion, normal, physiologic

plane of o. ⇒ plane, occlusal

posterior o. 후방교합.

postnormal o. ⇒ occlusion, distal

prenormal o. ⇒ occlusion, mesial

protrusive o. 전돌교합(前突咬合). 하악이 중상위로부터 전방위를 취할 때 치아간의 교합.

rest o. ▼ ⇒ position, rest physiologic

retrusive o. 후퇴교합(後退咬合). 하악이 중상위에서 후방위를 취할 때 치아간의 교합.

o. rim ⇒ rim, occlusion

reversed o. 반대교합(反對咬合).

spherical form of o. 구면교합(球面咬合). Monson이 주장한 것으로, 교합면이 직경 8인치인 가상의 구면에 일치한다는 치아의 배열.

supra-o. 과장교합(過長咬合).

o. table ⇒ table, occlusion

terminal o. 최종교합(最終咬合). 평면적접촉 또는 교합이 최대한으로 되는 대합치의 교합면간 관계.

traumatic o. 외상성교합(外傷性咬合). 치아·치주조직·치조골 등 구강내 조직에 과도한 힘을 주어 손상을 야기시키는 교합. 때에 따라서는 격심한 동통이 오고 특히 편측성이 특징임.

traumatogenic o. 외상원성부정교합(外傷源性不正咬合). 잔존치조제·치아 및 기타 조직에 상처나 외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교합.

working o. 작업교합(作業咬合). 하악이 내측으로 이동되는 쪽에서 상하악치아간에 오는 교합면 접촉으로, 전방이나 후방에서 관찰하든 상하악치아에서 협측교두는 협측교두끼리, 설측교두는 설측교두끼리 접촉하고, 측면에서 보면 상하악치아교두는 하악치아교두의 후방에 위치함. 즉 상악치아교두의 근심경사면은 대합치교두의 원심경사면에 접촉하고 따라서 상악치아교두의 원심경사면은 대합치의 근심경사면에 접촉함.

신간안내 / 李 漢 水 著

齒 科 醫 史 學

I 서 설

1. 치과의사학이란 무엇이나.

치과의사학은 의(醫)의 시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발달 양상을, 현대 치과의학의 입장에서 일반 사학(史學)의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하여, 그 역사적 지식의 전개를 통해서 그 사적(史的) 필연성을 탐구하고, 그것으로써 치과의학의 본질을 규명하여 이제부터 발달되어야 할 참된 치과의학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치과의사학은 치과의학의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기보다는, 현재로부터의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과학의 한 분과이다.

치과의사학은 언제나 현재를 그 연구의 기점(基點)으로 삼는다. 그래서 치과의사학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나 역사적 사상(事象)을 단순한 변천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규정 짓는 발전으로서 파악한다.

치과의사학 연구가 전체 치과의학의 발달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임은, 항상 새로운 과학을 낳고 다시 그것을 키우기 위해선, 우선 과학이 지내 온 역사를 되돌아 봄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까닭이다. 과거의 치과의학에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다. 역사성, 곧 그 역사적 사상(事象)은 비록 과거이나, 참으로 과거인 것은 그 모두가 현재와 장래속에 있으면서 무한히 발달해 나아가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느 때나 현재의 영원한 연장이다. 현재의 치과의학은 과거로부터 태어나 미래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나, 그러나 현재에 의해 가장 크게 규제된다. 현재의 치과의학은 잠시도 멈춤 없이 발달한다. 오늘의 치과의학은 그 자신이 자신에 의해 자가될 때에 그 대로 역사적 사상(事象)이 된다.

치과의사학은 기초의학의 한 분과이며, 과학사와는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한편, 과학사와는 또 다른 영역을 지니기도 했다.

齒 科 醫 史 學

李 漢 水 著

延世大學校 出版部

신간안내 / 李 漢 水 著

韓國齒學史

이 책을 내면서

저자는 먼저 이 책을 우리 나라 치과의학 발달을 위해 크게 헌신하시고 이제는 그 존함마저 잊혀진 우리 모든 선배님들 영전에 바친다.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이 그 여러 선배님들의 공덕을 가리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잘못을 어찌 사함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마저 품어 본다.

이 책은 저자가 이 강산의 치과의사로 서 하나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주위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하는 뜻에서 썼다.

본서의 내용은 196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위시한 연세대학교·경희대학교·조선대학교·연세대학교 의학기술수련원 치과위생과 등에서 치과의사학 강좌로서 강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본서의 구체적인 집필의 착수는 각 대학에서 저자가 담당했던 강의 내용을 일단 1972년부터 서서히 정리하면서부터이다. 1983년에는 당시까지 일단 중단되었던 대한치과의사학회 학회지의 발행이 속간됨에 따라 저자는 그때부터 1987년까지 만 5년간을 전후 5회에 걸쳐 정리되었던 논문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후 일단 발표하였던 내용들을 재차 정리하며 공인된 학회를 통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거쳐 이제 비로소 간행을 보게 되었다.

요즘 치과의사학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 점은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치과의사학이 치과의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분과로서 깊이 인식되기에는 아마도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줄 안다.

치과의사학 강좌는 현재 국내의 모든 치과교육기관에 있다.

韓國齒學史

李 漢 水 著

서울대학교출판부

□역대회장□

1960. 10. 7~1974 李漢水

1975~1981 李德一

1982~1983 李漢水

1984~1988 金正均

1989. 6. 13~현 李丙台

중신명예회장

이동섭

이덕일

전 회장 이한수

직전회장 김정균

□임원명단□

회 장 이병태

부회장 박승오

신재의

이 사 김지호

허정규

배광식

홍예표

감 사 이시우

임경빈

1990년 6월 25일 인쇄

1990년 6월 30일 발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1권 제1호 통권11호

〈비매품〉

발행인 : 이 병 태

편집인 : 김 성 남

발행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의사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3동 409-1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1, No. 1, 1990

Publisher : Lee,Byung-Tae

Editor in Chief : Kim,Sung-Nam

Address Yung-Doong-Po,

C.P.O.Box 41,SEOUL,KOREA